

관세연구 17-02

수입세액 정산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2017. 6.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빛마로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지 우 연구원

김 다 량 관세사

목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AEO 세액정산제도	9
1. 배경	9
2. 제도 개요	14
3. 적용 대상 및 기간	16
4. 혜택	17
가. 매입세액공제	18
나. 가산세 부담 감소	20
다. 관세조사 면제	22
라. 자체평가서 제출 면제	23
마. 세관의 관세조사 관련 행정업무부담 감소 및 추징에 대한 정확성 제고	24
5. 제도 절차	25
6. 심사내용	30
가. 관세심사 변천	30
나. 심사내용	33
7. 운용주체	37
가. 기업상담전문관(AM)	37
나. 확인관세사	42
III. 미국의 정산 및 수입자 자율심사제도	44
1. 연구배경	44

2. 정산제도(Liquidation).....	45
가. 제도 개요.....	46
나. 제도 절차.....	48
다. 기타 내용.....	50
3.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	50
가. 배경.....	51
나. 제도 개요.....	52
다. 자격 요건.....	54
라. 혜택.....	62
마. 제도 절차.....	67
바. 심사내용.....	74
사. 심사사례.....	79
IV. 제도비교 및 시사점.....	88
1. 국제비교.....	88
가. 정산제도와 비교.....	88
나. 자율심사제도와 비교.....	91
2. 시사점.....	100
가. 제도 정착을 위한 컨센서스 필요.....	100
나. 세부 가이드라인 필요.....	102
다. 관세조사 및 심사면제의 완전성 여부.....	103
라. 기업상담전문관(AM)과 확인관세사 간의 협업 중요성.....	104
마. 향후 단계적 제도 확대 고려.....	105
참고문헌.....	107
부록.....	109

표목차

〈표 II-1〉 국내 수입에 따른 관세·내국세의 징수 추정액 과세불복 추이.....	11
〈표 II-2〉 관세심판 현황.....	12
〈표 II-3〉 관세조사 현황.....	12
〈표 II-4〉 세액정산제도 적용 예시.....	20
〈표 II-5〉 수입세액정산제도 적용 전후 비교.....	36
〈표 II-6〉 우리나라 기업상담전문관의 역할.....	39
〈표 II-7〉 확인관세사 체크리스트 예시.....	43
〈표 III-1〉 ISA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요소.....	75
〈표 IV-1〉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산제도 비교.....	89
〈표 IV-2〉 우리나라 정산제도와 미국 ISA의 자격요건 비교.....	92
〈표 IV-3〉 우리나라 정산제도와 미국 ISA의 심사절차 비교.....	93
〈표 IV-4〉 우리나라 정산제도와 미국 ISA의 심사내용 비교.....	94
〈표 IV-5〉 우리나라 정산제도와 미국 ISA의 비교 요약.....	99

그림목차

[그림 II-1] 세액정산제도 운용 원리.....	15
[그림 II-2] 규제신설 후 자율심사 프로세스.....	28
[그림 II-3] 수입세액정산제도 미지정 업체 자율심사 프로세스.....	29
[그림 II-4] 자체평가 절차.....	29
[그림 III-1] 미국 통관절차 흐름에서 정산과 ISA의 위치.....	45
[그림 III-2] US CODE상 정산의 위치.....	46
[그림 III-3] CFR상 정산의 위치.....	47
[그림 IV-1]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산제도 흐름 비교.....	90

I. 서론

- 최근 수입물품 통관 후 사후 관세·부가세·가산세 등 추징 사례가 증가하고 부과제척 기간이 연장되면서 납세자 추징부담이 증가함
 - 심사 시 관·부가세 및 가산세·가산이자가 일시 추징되어 납세의무자 부담이 가중됨
 - 부과제척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

- 심사에 따른 기업-세관 간 마찰은 조세저항으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수입에 따른 조세(관·부가세)불복건수는 2012년 기준 446건에서 2014년 741건으로 약 300건(약 66%) 증가함

- 관세청은 납세의무자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AEO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2017년 신설함
 - 수입세액 정산제도란 수입 AEO 공인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세액을 조기에 확정하여 추가 납부의 위험을 없애는 제도임
 - 주기적 가격정산 시스템으로 기업의 성실신고 저변 확대 및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수입세액정산제도는 1년치 세액을 정산하여 예상치 못한 담세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용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납세 실질신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지됨

-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임

- 관세심사제도와 관련하여 권오 외(2009), 정재완(2009), 최준호(2005, 2015)는 납부세액 정산제도 및 기업상담관제도 도입 방안의 검토, 관세심사제도를 분석했으나 우리나라 수입세액 정산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는 없음

- 본 연구에서는 수입세액 정산제도와 미국의 정산/자율심사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 본 연구는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II장에서는 2017년 신설된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배경, 적용대상 및 기간, 관세심사 변천 및 현황, 제도 절차, 기업상담전문관제도, 확인관세사, 혜택 등에 대해 정리함
 - 제III장에서는 미국 정산제도(Liquidation)의 법령 내용과 수입자자율심사제도 (ISA)의 배경, 자격요건, 혜택, 제도절차, 심사내용 및 심사 사례 등을 살펴봄
 - 제IV장에서는 미국 제도와 국제비교 및 시사점을 도출함

II. 우리나라의 AEO 세액정산제도

1. 배경

-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기업심사가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수입업체의 관세 등의 추징사례가 증가하고 있음¹⁾
 - 2016년 기준 평균추징액은 정기심사 6억원, 기획심사 13억원임²⁾

-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세금징수 기간에 대한 부담이 가중 되었음³⁾
 - 2013년 8월부터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는 경우 제척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음
 - 기간이 연장된 데 대한 심사대상 통관건수가 늘었고 이에 따라 수입 관련 세금 추징 건수가 증가함

- 기업의 거래형태 다양화로 인한 관세평가상의 문제, 기술고도화 등으로 야기되는 품목 분류상의 문제, 협정세율 적용의 복잡성 등 관세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관세 추징의 위

1)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727951.html>,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08/20140801228991.html>, (검색일자: 2017.5)

2)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설명자료(2017), 이정관세법인

3)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31., 2013.8.13.> 제척기간 국가가 결정, 경정 등 특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이 정하여 높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 동안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됨. 제척기간이 만료하였어도 해당 결정, 판결,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시 납세의무가 소멸되어도 관세가 부과됨

협이 증가함

-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고도화로 IT 및 복합다기능 디지털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한 사후 추징으로 수입업체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⁴⁾
- 또한 관세율이 국가별로 1품목 다세율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품목분류 정확성이 더욱 요구되고 원산지 허위신고로 인한 새로운 관세탈루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음

□ 추징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되는 제도가 시행됨⁵⁾

- 세관 직권정정으로 인한 추징 또는 관세조사 통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입부가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됨
 - 납세의무자가 자율정정(세액보정,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와 가산세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세관이 직권정정하는 경우 즉 세관경정시에는 가산세, 가산세이자 외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
 -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부가세 10% 부분에 대한 페널티 성격의 추징에 조세저항이 발생함⁶⁾

□ 관세청의 제한된 심사인력으로 적시 세액심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기업 입장에서는 심사 시 대규모 세액추징 가산세 등의 위험이 있어 적시 정산이 필요함

□ 위의 여러 요인으로 추징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납세자의 강한 조세저항을 불러옴

4)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세액 정산제도 등 도입방안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8.12. p.2, p.13

5) 2013년 7월 「부가가치세법」 개정

6)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을 할 수 있는 제도로는 세액보정, 수정신고, 세관경정 3개가 있는데 세액보정 및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의 자율정정이고 세관경정은 세관이 직권정정하는 것임

- 결국 납세자가 인정하지 못하는 세관 처분은 조세불복으로 이어지고, 세관의 추징증가로 인해 기업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심사로 인한 추징은 기업이 예상치 못한 상당한 세금을 일괄납부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표 II-1>에 따르면, 관세추징액은 2012년 1,974억원에서 2014년 7,952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기업의 조세불복은 2012년 기준 446건에서 2014년 741건으로 약 300건(약 66%) 증가함

<표 II-1> 국내 수입에 따른 관세·내국세의 징수 추징액 및 과세불복 추이

(단위: 억원, 건)

	2012	2013	2014
수입에 따른 관세·내국세	659,002	655,123	581,468
관세추징액	1,974	7,868	7,952
과세불복	446	540	741

자료: 감사원, 「조세불복현황」, 2015

- 세관의 기업심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및 인용률이 증가함
 - 2014년 인용률은 56.4%로 최근 6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2015년 인용률은 43.9%로 다소 줄었으나 5년 전 대비 12.3% 증가한 등 여전히 높은 수준임

〈표 II-2〉 관세심판 현황

(단위: 건, %)

연도	처리대상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인용률		이월 건수
	소계	전년 이월	당년 접수	소계	취하	각하	기각	재조사	인용		a ¹⁾	b ²⁾	
'15	440	98	342	196	32	9	83	43	29	44.5	43.9	24	244
'14	505	79	426	407	26	15	151	133	82	80.6	56.4	33.1	98
'13	339	26	313	260	8	29	85	-	138	76.7	54.8	-	79
'12	223	20	203	197	5	17	107	-	68	88.3	35.4	-	26
'11	212	67	145	192	5	6	122	-	59	90.6	31.6	-	20

주: 1)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

2) 재조사를 제외한 인용률

자료: 『조세심판통계연보』 2016. pp.16~28

□ 관세조사 현황을 보면 역시 다국적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대상인 추징업체 수가 확대되고 추징금액도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음(〈표 II-3〉 참조)

- 관세추징 대상 업체는 2011년 다국적기업 44개, 국내기업 213개에서 2015년 각각 136개, 244개 업체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257개에서 380개로 123개 업체가 늘어남
- 관세추징 총금액은 2011년 3,748억원에서 2015년 5,014억원으로 금액 대비 1,266억원, 약 34% 증가함

〈표 II-3〉 관세조사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다국적 기업	44	2,852	55	971	182	3,559	198	2,364	136	2,763	82	1,578
국내 기업	213	896	183	1,003	250	1,939	276	1,864	244	2,251	195	712
계	257	3,748	238	1,974	432	5,498	474	4,228	380	5,014	277	2,290

주: 업체수는 추징업체 기준

자료: 박명재 의원실(관세청 집계)

- 관세심사 추징으로 인한 조세불복은 과세관청의 행정손실과 행정 신뢰성 저하 등을 유발함
 - 조세불복 시 세관 측도 심판청구에 참석해서 논리를 작성하고 해명해야 하므로 행정력 손실 및 업무 가중이 우려됨

- 부과제척기간 연장, 세관심사 강화, 납세저항 등의 이유 외에도 관세청은 AEO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옴

- AEO 공인기업은 세액오류에 대한 수입자의 자율적인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원활히 활용하지 않아 AEO 종합심사 시 통관 적법성심사를 통해 5년치 누적된 관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함
 -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는 AEO 공인기준 중 법규 준수도 하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추징과 적합한 심사기법이 필요함
 - 정확한 추징과 심사를 통해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심사제도 운영과 심사기법의 고도화가 요구됨

- 이처럼 정확한 세액 확정을 통해 세관-기업 간 조세마찰을 줄이고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목적으로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도입됨
 - 관세분야 추징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부담 불확실성의 조기 해결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함

2. 제도 개요

- 관세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AEO⁷⁾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2017년 4월 1일 신설함
- 수입세액정산제도는 「AEO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3,4를 따름
 - 「AEO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에 따라 AEO 수입기업 중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정산보고업체로 지정하고, 납세신고세액 등을 자체점검하여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함
 - 단, 일시적으로 법규 준수도가 하락하는 경우 관세조사 면제는 예외임⁸⁾
 - 제18조의3(정산보고의 확인) 정산보고서 정확한 검증을 위해 관세사를 선임함
 - 제18조의4(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정산보고 심사결과 확정된 세액 등에 대하여 관세조사 면제를 신설함
- 수입세액 정산제도란 수입 AEO 공인기업 중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통관 적법성 분야에 대해 자체점검 및 제3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임
 - AEO 종합심사 대상 중 통관 적법성을 별도 분리하여 매년 수입자가 자율심사하도록 심사주기를 단축(사후관리를 축소)하고, AEO 기업이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원활히 이용하도록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설계함
-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의 자체점검, 외부전문가 검증, 세액정산 확정력 등 3가지 축에

7)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미국·일본·중국·EU 등 총 47개국이 시행 중인 AEO제도는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세계관세기구)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 기준에 근간을 두고 각 국가의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내부 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재무건전성을 심사해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고 관세제도상 혜택을 주는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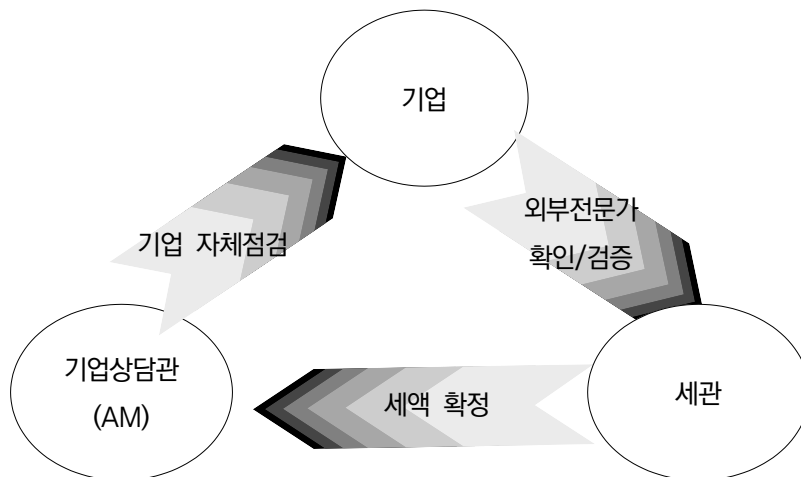
8) 제6조(공인신청) 제4항 및 제27조의2 제5항

의해 운용됨

- 기업의 자체점검은 기업이 일정 기간 축적한 통관, 감면, 세액심사, 환급 등 관련 자료와 AM 제공 위험정보를 연계하여 정기수입세액정산보고서를 만들
- 정산보고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분야 전문가인 관세사의 조력을 받아 검증함
-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제출된 수입세액정산보고서에 대하여 세관심사 후 세액 확정 및 관세조사가 면제됨

□ 정산보고서 제출 전 관세사 검증 확인 및 정산보고 심사결과 확정된 세액에 대해 관세 조사를 면제함

[그림 II-1] 세액정산제도 운용 원리



출처: 저자 작성

- 정산보고서에는 법인개요, 분야별 점검사항, 기업상담전문관의 제공정보 검증결과, 진행중인 쟁점사안 등을 기록함
- 법인개요는 회사소개, 사업내용, 지배구조, 경영현황, 조직 및 업무, 업무 프로세스, 내부시스템 설명, 통관현황 등을 기재함

- 분야별 점검사항은 확인관세사 검증결과를 포함하며 과세가격(특수관계 거래 포함), 감면, 품목분류, 환급, 내국세, 보세공장, 외환 등임

3. 적용 대상 및 기간

- 수입세액 정산제도 적용 대상은 수입부문 AEO 공인기업으로, 강제사항이 아닌 신청자 중 지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함
- 정산업체는 수입부문 AEO 공인 여부 등 지정요건을 만족해야 함
 - 수입부문 AEO 기업 중 수출 및 물류 부분만 공인받은 수입기업은 제외함
 - 최근 2년 이내 특례적용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기업은 제외함
 -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혐의로 세관조사 진행 여부를 확인함
 - 기타 납세협력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제외함
- 관세청은 2017년 3월부터 수입세액 정산제도 참여 업체를 모집했으며 7월 전체 AEO 공인 수입업체 134개 중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함
 - 10개 업체의 업종은 전자, 화학, 식품유통, 담배, 타이어, 이차전지 등이며 외국계기업도 포함됨
- 대상기간은 매년 직전 정산연도임
 - 12월 결산법인: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
 - 3월 결산법인: 2016년 4월 1일~2017년 3월 31일까지
- 12월 결산법인 기준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일정은 다음과 같음
 - 1~2월: 세관이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자체점검함

- 3월~6월말: 기업이 관세사 검증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함
- 7~9월: 세관이 검증함
- 10월: 세관이 결과 통지함

4. 혜택

- 수입 AEO 인증기업 중 수입세액 정산신고 미활용기업은 현행과 같이 연1회 자체평가서를 제출하고, AM 정보 제공 뒤 미흡 조치시 기획심사가 실시되며, 5년 주기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5년분이 일시 추정됨
-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통해 기업은 수입세액을 조기에 확정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운영의 관점에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따라서 자율심사를 통한 납부세액 사항 조기 세액확정 절차 등 마련으로 기업의 성실신고 저변 확대 및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음
- 수정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 부가가치세액이 공제되며, 1년 단위로 정산하므로 가산세가 발생되더라도 누적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됨
 - 매입세액공제 수정신고하면 수정부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고 그 이후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추정될 수 있으므로 조기 세액확정을 통해 안정적 기업활동 및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⁹⁾

9) http://www.samili.com/tax/BookFrame.asp?selyear=n-12:77^n-12:77-20160720^2016#bookCon_30 (접속일자: 2017. 6. 14)

- 정산건에 대해서는 심사가 면제되므로 기획심사로부터 자유로움
- 정기 자체평가서 제출이 면제됨
 - 수입뿐 아니라 수출 및 물류 부분 자체평가서도 면제함
 - 현장심사에서 통관 적법성과 공인기준을 심사함
 - 일반적인 법인심사는 대상이 아니며 자체평가는 AEO 공인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자체평가 시 공인기준에 대해서만 자료를 갱신함

가. 매입세액공제

- 기업심사를 통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로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음
 - 우리나라는 감면 신청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자진 수정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추징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제한됨
- 추징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해 기업-세관 간 조세마찰 및 기업에 재무손실이 발생함
 - 종합심사로 인해 수정신고하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원래 납부해야 하지만 부가세 10%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은 업체 입장에서 타격이 됨¹⁰⁾
- 정산제도 지정업체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동 제도 시행으로 기업들이 재무적으로 얻는 혜택 중 매입세액공제 부분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10) AEO기업은 5년마다 종합심사를 받음

○ 즉 AEO 기업의 경우 부가세 100억원까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¹¹⁾
- 2014년 기준 AEO 공인기업의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부가세 100억원을 발행하였고, AEO 미공인기업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부가세 340억원을 추징함

□ 최근 3년간 종합심사 추징부가세는 2,788억원이었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매입세액공제된 금액은 약 278억원(연 92억원)임¹²⁾

□ 다음 표는 조기정산 미적용 시 발생한 추징사례를 통해 정산제도 적용으로 인해 매입공제 혜택이 발생함을 보여줌

11) 비AEO기업의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12) 관세청 심사정책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017

〈표 II-4〉 세액정산제도 적용 예시

	세액정산제도 미적용	세액정산제도 적용
위험요소	실제지급금액 누락	-
AM 제공정보	A사와의 외상매입금은 00백만달러(지급액은 00백만달러)임에도 수입신고액 00백만달러 약 00만달러를 신고누락하였을 개연성 있음	-
검증결과	선급금으로 지급한 미화 00만달러 과세 누락	-
판단이유	동사는 2015.1.1. 독일 A사와 “반도체 장비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사가 주문하는 사양서의 장비를 주문제작하면서,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미화 〇〇달러를 선급금으로 지급(15.3.1)함. 최종 제작된 설비에 대하여 수입신고번호 12345-16-1234567A호 등 3건으로 분할수입하면서, 선급금에 대하여 신고누락함	-
입증서류	구매공급계약서 1부, 송금영수증 일체, 송장(Invoice) 등	-
누락과세가액	A 원	1년치 세액 조기확인
관세	B 원	
부가세	C 원	매입세액공제 (수정신고서 발행)
가산세	D 원	1년치 (5년 가산이자 차감)
합계세액	E 원	-

자료: 관세청,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참고 저자 작성

나. 가산세 부담 감소

- 1년마다 세액을 정산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연장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부과제척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가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추징 위험도 커짐
- 정산보고 적용 시 조기세액 확정을 통해 종합심사 추징 가산세 약 502억원(연간 167억원) 절감이 가능함¹³⁾
 - (가정) 최근 3년 종합심사 추징액은 약 3,233억원으로 5년 추징 시 가산세는 본세의 약 40%에서 1년 추징 시 가산세 본세의 약 15%임
 - 가산세는 ① 해당 부족세액의 10%, ②이자율을 합산하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부족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함¹⁴⁾
 - 5년 추징가산세 $3,233/1.4=924$ 억원에서 1년 추징가산세 $3,233/1.15=422$ 억원으로 502억원을 절감함
- 가산세는 기간별로 감면비율이 차등적용되므로 정산제도를 통해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관세 수정신고 시 기간별 가산세 감면비율을 차등적용하므로 1년마다 세액정산을 통해 가산세 축소 효과도 있음
 -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시 20% 가산세를 감면하고,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10%를 감면함¹⁵⁾
- 가산세를 1년마다 정산할 수 있어 가산세이자율에 따른 납부금액이 감소함
 - 기업심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적발하고 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정기에금이자율 수준(4.7%)에서 연체대출 이자율 수준(연10.9%)으로 인상함¹⁶⁾

13) 관세청 심사정책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017

14) 「관세법」 제42조(가산세)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 일반수입신고물품은 가산세 규정에 관세만 포함되고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부가세 등 내국세는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규정이 별도로 있어 관세의 가산세는 「관세법」에 따라, 내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하게 됨

15) 기존에는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정신고를 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0% 감면해 주고 있으며, 6개월 이후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감면해주지 않았음

- 이자율은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¹⁷⁾)
-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아 가산세를 징수함
- 단,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음

다. 관세조사 면제

- AEO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4에 의거, 조치 완료된 정산연도의 관세조사는 면제한다고 규정함
 - 제1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에 대하여는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함
- 즉, 수입세액정산제도 참여업체는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에 대해 심사결과 확정된 세액의 관세조사를 면제하며, 정산기간 대상건에 대한 심사면제 혜택을 부여함¹⁸⁾
 - 종합심사(안전관리), 법인심사, 기획심사 모두 해당함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면제에서 제외됨
 -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6) 관세연보(2016) p.133. 365일 기준

17) 2015년 2월부터 13/100,000에서 3/10,000으로 바뀜

18)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

-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 기타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검토, 질의, 자문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과 통지한 사안의 경우

라. 자체평가서 제출 면제

- 자체평가서는 AEO 공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기업이 자율적인 법규 준수 및 안전관리 평가 역량 배양이 목적임
 - 자체평가는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및 안전관리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활동이며, 이는 AEO 공인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현황 확인을 통해 점검할 수 있음¹⁹⁾
- 자체평가서는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며 AEO를 받은 기업은 세관에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에 대해 연례보고해야 함
 - AEO 기업이 된 후 사후관리에서 자체평가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감면, 환급 등 납부세액 적정성 등의 내용은 미포함되어 있음
- 자체평가서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제도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음
 - 행정비용은 연간 약16억원, 관세사비용은 연간 약 2,400만원인 것에 비해 기업의 조세부담 경감 등의 경영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음²⁰⁾
-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사후관리를 위해 자체평가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수입세액 정산제도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수입뿐 아니라 수출 및 물류부분의 정기 자체평가서

19)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근거함

20) 연간투입인력, 소요기간, 평균연봉 근거 산출. 관세청 심사정책과 규제영향분석서 2017, p.11.

제출이 면제됨

- AEO 공인기업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1회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자체평가하여 자율적인 법규 준수 및 안전관리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함
- 수입세액 정산제도 도입 시 자체평가를 면제하며, 종합심사 때 공인기준 위주로 검토하고 통관 적법성은 정산보고서로 대신함²¹⁾
 - 공인기준은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개 기준임
 - 통관 적법성은 과세가격, 외환, HS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지식재산권, 통관요건 등 8개 분야이며 정산보고에서는 지식재산권과 통관요건이 제외됨
- 다만, 우리나라의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제출 시 정기자체평가보고서가 생략되므로 이에 따른 AEO 공인기준인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에 대한 세관의 관리 소홀화가 우려됨
 - 기존 매년 정기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AEO 공인의 유효성을 확인하던 것을 공인취득 후 5년에 한 번 실시되는 종합심사에서만 공인기준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내부통제시스템은 공인기업의 법규준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를 5년에 한 번씩 관리한다면 기업의 위험자율평가 체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음

마. 세관의 관세조사 관련 행정업무 부담 감소 및 추징에 대한 정확성 제고

- 정산제도로 추징건수가 감소하게 되면 세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낮아짐
 - 심사건수의 증가 대비 세관 인력의 한계로 인해 심사로 인한 추징은 세관행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1) 종합심사 때는 통관 적법성 부분을 법인심사처럼 모두 검토하며, AM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공인기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

- 매년 정산 시행을 통해 상시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추징위험이 감소하고 예상치 못한²²⁾ 세액심사부분에 대한 추징 오류가 줄어들어 추징에 대한 업무 부담이 감소할 수 있음
 - 세액심사 시 자주 발생하는 저가신고, 과다납부 환급 청구 등에 대한 추징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이처럼 정산제도가 정착되면 심사로 인한 추징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심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예상됨
 - 심사 자체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성실납세 분위기가 형성되고 결국 심사로 인한 추징이 감소함

5. 제도 절차²³⁾

- 관세청장은 매년 수입세액 정산업체 신청 공고문을 발송함
 - 주요 발송처는 AEO 수입기업, 한국관세사회, AEO 진흥협회 등임

-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수입 AEO 공인기업이 수입세액 정산보고업체 신청을 해서 정산업체로 지정되면 동 정산업체는 매년 통관 적법성 분야를 자체점검 및 정산보고함

- 공고 이후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①지정신청→②AM 위험 정보 제공→③업체 자체점검→④정산보고서 제출→⑤결과보고서 평가→⑥심사종결 순으로 정산보고업무 절차가 진행됨

22) 혹은 의도하지 않은

23)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세청 심사정책과, 2017.4.1

- 지정신청 단계에서 수입세액 정산을 원하는 기업은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에게 제출함²⁴⁾
 - 이때 확인관세사는 최소 2인 이상 선임해야 하며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도 함께 제출함²⁵⁾
 - 기업상담전문관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신청서의 각 기재사항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함

- 정산업체는 수입부문 AEO 공인 여부, 최근 2년 이내 특례적용의 정지를 2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혐의로 세관조사 진행 여부, 기타 납세협력의무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받게 됨
 - 수출 및 물류부문만 공인받은 수입기업은 지정이 제외됨
 - 관세청장은 정산업체로 지정 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수입세액정산업체지정서를 신청업체에 교부함²⁶⁾

- 확인관세사를 선임한 정산업체는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며, 기업상담전문관은 관세사의 확인결과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음
 - 선임관세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변경신고서²⁷⁾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해야 함

- 기업상담전문관은 위험정보를 분석하여 정산보고서 제출만료일 2개월 전까지 정산업체에 제공함²⁸⁾

24) 부록Ⅲ 제13호서식 참조

25) 부록Ⅲ 제16호서식 참조

26) 부록Ⅲ 제14호서식

27) 부록Ⅲ 제17호서식

28) AEO 고시 제18조의2 제4항

- 위험정보 분석을 위해 필요시 정산업체에 자료제출 요청 또는 현장 견학이 가능함
- 위험정보 제공시기, 횟수 등은 정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함

- 정산업체는 직전 정산연도의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대해 자체점검하고, 수입세액 정산 보고서를 작성함
 - AEO 고시 제18조의2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자체점검하고,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작성함
 - 각 사항별 작성범위 등에 대하여 기업상담전문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동 가이드라인²⁹⁾ 활용함
 - 정산보고서는 정산연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업상담전문관과 협의하여 3개월 연장이 가능함

-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결과 통지 전에 수입세액 정산결과(처분위 결정사항 포함), AEO 자격 유지에 따른 통관·세제 혜택, 기업발전을 위한 제언 등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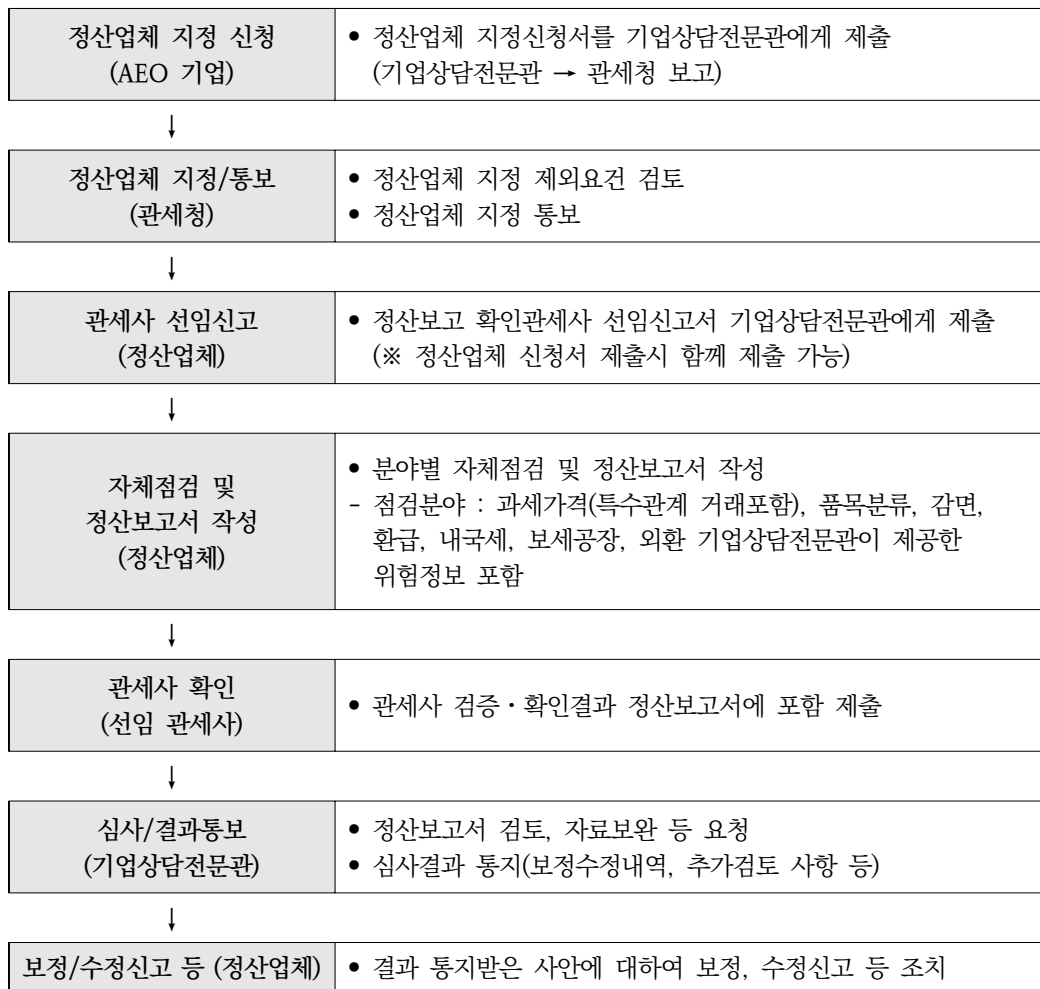
- 정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를 통지함
 -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입세액 정산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정산사항, 추가 검토할 사항 등을 구분하여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함

- 정산결과 통보서는 과부족 세액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됨
 - 과부족 세액이 확정되는 사안의 경우 보정·수정신고·경정청구 내역
 -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보류사유 및 향후 계획 등
 - 사전심사, 질의 등이 필요하거나 진행중인 경우 조치할 사항 등
 - 기타 관세행정 측면에서 기업의 위험요소 등 컨설팅 사항

29) 정산보고서 작성방법, 부록 참조

- 정산업체는 정산결과 통보서를 받은 즉시 필요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기업상담 전문관에게 통보함
- 정산업체는 정산결과 통보서를 받은 즉시 '보정, 수정, 경정청구, 질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통보함
- 기업상담전문관과 협의하여 처분위 상정 전에도 '보정, 수정신고 등' 조치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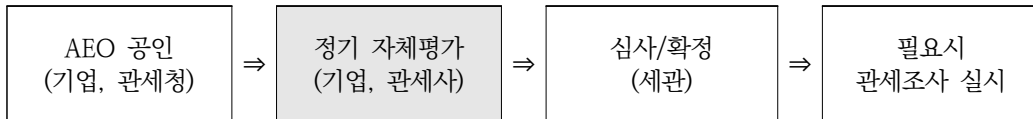
[그림 II-2] 규제신설 후 자율심사 프로세스



자료: 관세청, 「수입세액정산제도 가이드라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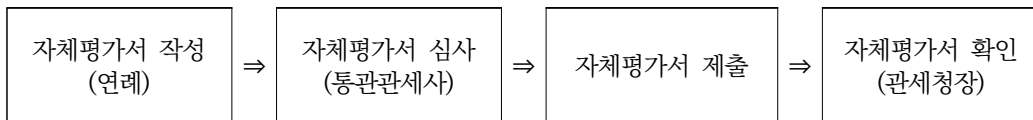
- 자체평가는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및 안전관리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활동으로 이는 AEO 공인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현황 확인을 통해 점검할 수 있음
- 자체평가 절차는 ① 수출입관리 현황 자체평가서 작성→② 자체평가서 심사→③ 자체평가서 제출→④ 자체평가서 확인 순서임
 - 자체평가서 심사는 공인받은 월의 익월 15일까지이며 AEO 교육기관, AEO 공인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관세사,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AEO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AEO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수료한 관세사, 보세사(보세구역 운영인 및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에 한함) 등의 전문가에게 심사받음
 - 단, 업체에 소속된 자라면 자체평가서 심사자가 될 수 없음

[그림 II-3] 수입세액정산제도 미지정업체 자율심사 프로세스



자료: 관세청 심사정책과, 「규제영향분석서」, 2017, p.9

[그림 II-4] 자체평가 절차



자료: 저자 작성

6. 심사내용

가. 관세심사 변천

-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신속통관 및 위험관리기법의 중시에 따라 통관후 세액 심사(Post clearance audit), 즉 선통관 후심사의 방식 위주로 세관통제를 변경함³⁰⁾
 - 심사는 시기에 따라 사전세액심사와 사후세액심사로 구분되는데 세액정산제도에서는 사후세액심사(기본)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임
 - 사후세액심사는 그 방법에 따라 건별심사, 기획심사, 종합심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업체별로 심사가 이뤄지는 것은 기획심사와 종합심사임
 - 기획심사는 특정 품목 또는 거래형태 등에 대한 분야별 심사임
 - 종합심사는 대규모 업체의 통관 및 무역거래 전반에 대한 심사임³¹⁾

- 수출입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가 기본이 되는 이유는 관세사가 통관신고를 하면 HS code에 따라 세율을 확인하고 세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수출입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고마다 과세관청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 물품이 선심사를 위해 계속 보류되어 있으면 해당 업체에 손실이 발생함

- 그래서 통관절차를 신속화한 대신에 이의 허점인 과세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하고 이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됨
 - 통관은 신속성이 중요한데 이 신속성을 위해서는 통관심사 단계에서 물품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요건만 확인한 후 즉 요건심사 후 즉시 통관시켜주고 있음
 - 신고세액이 정확한지 통관 적법성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 신고납부 세액의 정확성 확인이 필요함³²⁾

30)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aspx (접속일자: 2017. 6. 28)

31) 확인 aeo이후에

- 심사제도와 납부제도는 과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리나라 관세심사제도는 통관 적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편되어 왔으며 이번에 신설된 수입세액 정산 제도는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목적으로 설계됨

- 1948년 「관세법」 제정 당시 부과고지제도가 시작되었으며 1978년 개정을 통해 전면 신고납부제도 도입, 1990년 완전한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AEO제도 도입으로 성실기업에 대한 통관자율 보장체제로 전환, 2017년 수입세액 정산제도 신설로 발전함³²⁾
 - 지정세관제도(1980)는 신용이 확보된 업체에 대해 수출입 물품에 대해 일반적인 세 관절차를 생략하고 사후에 지정세관에 의해 종합관리하는 제도임
 - 종합신고대상업체 관리제도(1986)는 종합신고 대상자로 지정 시 통관지세관의 요건 심사 후 세무조정계산서의 기재 사실대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 통관함
 - 기업별 사후심사제도(1991)는 기업의 성실도에 따라 4분류하여 등급별로 서면조사, 간이실지조사, 일반실지조사, 세관이 채택하여 심사 등으로 차등 심사하는 제도임
 - 통관 적법성 조사제도(1996)는 요건확인 후 신속 통관하도록 도입된 제도로 납부세 액의 정확성보다 밀수단속 등 업체 처벌에 중점을 둔 제도임
 - 통관 적법성 자율점검제도(1998)는 업체 스스로 통관 관련 법규위반 여부를 점검하 여 세관에 자진신고하는 제도임
 - 자율점검 및 강제조사방식의 종합심사제도(2000)는 즉시심사, 기획심사, 정보분석심사 세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심사기능이 강화됨
 -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제도(2003)는 미국의 기업심사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자율 심사업체로 지정된 경우 건별·기획·환급 심사를 면제함
 -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제도(2004)는 모범성실업체를 선정하여 수입물품 검사 면 제, 2년간 세무조사 면제, 신용담보 한도액 증액 등의 혜택을 주며, 납부세액 정확성 확인을 위해 자율심사함

32) 「관세법」 제38조2항

33) 『한국관세심사제도의 현황과 과제』, 정재완(2009)

- AEO 도입(2009)으로 성실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통관자율 보장체제로 발전함
- 1980년부터 현재까지 심사의 방향이 업체 자율점검으로 전환된 것은 과거 기업심사가 밀수단속 등 업체 처벌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것과 구분되며 업체 스스로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자율성과 세액심사의 정확성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된 것은 관세심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복잡한 심사체계(건별·기획·종합·환급심사 등), 품목분류·과세가격 산정 등 어려움으로 인해 중복심사와 기업의 비고의적인 실수로 인한 추징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³⁴⁾
- 관세심사의 문제점으로 심사인력의 부족, 제한적 심사로 인한 효과적 세액관리상의 문제, 수입신고된 후 장기간 경과 후에 많은 금액을 한 번에 추징함에 따른 업체의 불만과 금융부담 문제,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 평가, 심사조직 및 인력운용의 비효율, 업계의 자발적 법규준수나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법규준수보다 적발 및 추징 위주의 강제조사방식 등이 지적되고 있음³⁵⁾
- 교토협약(Kyoto Convention) 가이드라인 세관통제편에 따르면 세관당국은 수입업체를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업체 스스로 업무에 대하여 자체심사하고 오류를 수정하게 하는 Trader's Self-Assessment(업체자율심사제도) 등 감사기반통제(audit-based controls) 방향으로 전환을 권고함³⁶⁾
- 이런 경향에 따라 처벌로 인한 추징에서 납부세액의 정확성 확보를 통한 성실납세 분위기 형성으로의 심사기능 이전이 필요해보임

34)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세액 정산제도 등 도입방안 연구」, 한국관세사학회, 2008.12. p.1

35) 우리나라 세액심사는 심사시기에 따라 사전세액심사와 사후세액심사로 구분되며 후자의 경우 심사 부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방법에 따라 건별심사, 기획심사, 종합심사로 구분됨.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세액 정산제도 등 도입방안 연구(2009) p.2

36) KYOTO CONVENTION GENERAL ANNEX GUIDELINES Chapter 6 CUSTOMS CONTROL, 2010, p.33

나. 심사내용

- 수입세액 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중요한 변화는 현행 자율심사정책 중심으로의 기본방향 전환에 있음
 - 과거 징벌적 심사 성격에서 기업의 자율심사를 중시하고 적시관리를 통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체계 중심으로 전환함
- 이러한 국내의 관세심사 환경 변화 요구를 배경으로 수입세액 정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 자율에 의한 심사로 수입업체가 신고세액의 정확성과 통관 적법성을 스스로 심사하는 것으로 동 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경영 안정성 확보와 자율 납세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아관파(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 이후 신설된 세액정산제도는 자율적 법규 준수 기반의 관세심사제도이며 납부세액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심사기능을 함³⁷⁾
-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법규 준수도와 관련하여 통관 적법성(legality)을 심사함
- 통관에 있어 적법성은 평가대상국의 통관 관련 법령과 규칙 및 세관을 포함한 통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관세평가, 품목분류, 통관물품 취급, 기타 통관절차의 이행과 관련한 행위가 평가대상국이 체결하고 있는 다자간협정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간 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의미함³⁸⁾

37) 심사분야와 관련된 법에는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FTA 관련 법이 있으며 통관요건과 관련된 법은 10가지인데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식품위생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기타 법령 등임

38) 정재호 외, 『통관환경 평가지표 개발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p.31

- 즉,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임³⁹⁾
- 통관 적법성 8대 분야는 과세가격, 외환, HS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지식재산권,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사항 등이 있으며 동 제도에서 원산지, 지식재산권 분야는 심사에서 제외함
-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통관 적법성 6대 분야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여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정확성 여부를 세관이 심사하는 것임
- 업체 자체점검은 6개 분야인 관세평가, 관세환급, 외환, 품목분류, 관세감면, 보세공장 등에서 이뤄지며 기업상담전문관이 표준 점검서식 제공을 통해 일시추징 위험을 제거함
 - 관세뿐 아니라 내국세 납부세액 적정성도 포함함
 - 보세공장 운영절차 및 외국환거래법상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함
 -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
 -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사항
 - 「개별소비세법」 등 내국세 납부에 관한 사항
 -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 보세공장 운영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 기타 기업상담전문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39) http://www.samili.com/tax/BookFrame.asp?selyear=n-12;77^n-12;77-20160720^2016#bookCon_30, p.102 (접속일자: 2017. 7. 5)

- 관세평가분야에서 수입세액 정산보고서의 구성은 무역거래도, 해외사업자와 체결한 계약현황, 가격결정방법 등임
 - 무역거래도는 거래 관련자를 포함함
 - 해외사업자는 수출입·용역·무형자산을 포함함
 - 가격결정방법은 특수관계와 비특수관계를 구분함

- 관세환급분야는 수출물품별 대표 소요량 계산서 및 부산물 처리내역 등으로 구성됨
 - 수출물품별 대표 소요량계산서 및 부산물 처리내역
 - 제조공정도 및 환급대상 원재료 설명서
 - 연간 원재료 매입, 사용내역, 제품 매출내역
 - 대체가능한 원재료 사용내역 및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 원상태 환급받은 물품내역 및 원상태 수출사유
 - 간이정액 환급신청인 적격 여부 검토자료

- 외환분야는 전체 채권, 채무 등으로 구성됨
 - 채권, 채무의 경우 수출입거래, 수출입 이외 거래로 구분함
 - 거래상대별 연중 채권·채무 발생액, 연말 채권·채무 잔액
 - 거래처별 채권양도 통지내역은 3가지급 확인을 위한 것임
 - 해외직접투자 관련 정보의 경우 현지법인 자회사, 손회사 내역, 지분 변동내역을 포함함
 - 무역외지급에 대한 거래처별 송금사유

- 품목분류분야는 동일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가 다른 건에 대한 분석자료 등으로 구성됨
 - 동일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상이한 건 분석자료
 - 사전질의회신 후 통관한 실적
 - 세관과 쟁점·질의 중인 건
 - 분석기간 중 최초 수입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
 - 위와 관계없이 수입금액 상위 10대 품목분류 근거

- 관세감면분야는 주요(일정금액 이상) 감면물품 사후관리 설명서(요약)로 구성됨
 - 주요 감면물품 내역, 전년과 비교, 감면사유, 물품 위치 등 사후관리

- 보세공장분야는 반입 원재료, 생산물품 그리고 반출까지 공정도 등으로 구성됨
 - 원재료 반입, 물품생산 및 반출까지의 공정도는 손모음을 포함함
 - 제품별 매출액(수출/내수 구분)
 - 1호 서식으로 반입된 실적
 - 세번, 공급업체, 수량, 금액 등
 - 잉여물품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 폐기, 수입신고 등
 - 원재료 실소요량계산서 작성 적정 여부
 -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닌 것의 포함 여부
 - 장외작업장 반입물품 처리실적
 - 직접반입을 포함하며, 허가기간 경과물품임을 확인함
 - 원재료 실소요량계산서 작성 적정 여부
 - 수출 후 하자 발생 등 사유로 반송된 물품 처리 현황

〈표 II-5〉 수입세액 정산제도 적용 전후 비교

	정산제도 미활용	정산제도 활용
제출서류	정기 자체평가서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대상업체	AEO 공인업체 전체 (수입업체 134개)	AEO 수입업체 중 지정업체(2017년 10개)
평가주기	매년	매년
심사분야	4대 부문, 71개 분야	6대 부문, 37개 분야

자료: 저자 작성

7. 운용주체

- 세액정산제도 운용은 기업이 일정기간 축적한 통관, 감면, 세액심사, 환급 등 관련 자료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이 제공하는 위험정보를 연계하여 기업이 자체점검을 하면 세관이 세액을 확정하는 것임
 - 이때 보고서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확인관세사가 자체점검사항을 검증함
- 수입세액 정산은 매년 평가하는 데 지난 1년간 수출입신고한 내역을 검토해서 부족한 세액은 정정납부할 수 있으므로 추징으로 인한 세금위험을 제거할 수 있음
- 정산보고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산보고서 작성 기업 이외에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외부전문가는 제3관세사 혹은 확인관세사라고 지칭하며 통관관세사는 제외됨

가. 기업상담전문관(AM)⁴⁰⁾

-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가 요구되는 AEO제도 도입으로 AEO 공인업체의 공인기준 유지 및 통관 적법성에 대한 법규 준수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협력·파트너 역할을 담당할 기업상담전문관(AM)제도도 함께 도입하게 됨
 - 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무역 공급망 안전과 원활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 경향에 따라 주요 각국에서는 명칭을 달리한 C- PAT 및 AEO 제도가 도입됨
- 기업상담전문관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 실현을 목적으로 기업에 법규 정보제공, 기업의 법규위반 위험요인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기업의 세관 접촉점(Contact Point)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함⁴¹⁾

4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7.4.1.] [관세청 제2017-12호, 2017.4.1] 제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 기업상담전문관이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 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밖의 공인기준(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 적법성 적정 여부를 포함한다)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을 말함⁴²⁾
-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기업에 대해 업체별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지정함
- 관세청은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개선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옴
- 기업상담전문관은 기업과 세관 중간에서 정보 제공과 소통의 역할을 함⁴³⁾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 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및 자체평가의 확인 및 점검
 -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 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 구체적인 기업상담전문관의 임무는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 세칙」 제48조부터 제53조를 따름
 - 업체와의 연락채널 유지,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 공인기준 및 법규 준수 점검·개선
 - 기업프로파일 관리
 - 업체 변동사항 등 모니터링 및 조치

41)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기업상담관(AM)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2009, p.88

4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시행 2017.4.1.] [관세청고시 제2017-12호, 2017.4.1., 일부개정] 제2조 제5호.

4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기업상담전문관의 지정·운영)

- 정기 자체평가서 점검
-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 유지
- 종합심사 팀장에게 정기 자체평가, 변동사항보고, 기업상담전문관의 정보 제공에 대한 자율점검 등 사후관리의 충실성, 세관 협력도 등 심사 관련 정보 제공

〈표 II-6〉 우리나라 기업상담전문관의 역할

구분	주요 내용
자문, 상담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관련 자문·상담 ● 공인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관련 세관공무원과 협의 등 ● 법령 제정(개정) 사항, 관세정책 변경, 우수사례 등 담당 공인기업의 공인기준 이행과 법규 준수 향상·유지에 유용한 정보 제공 ● 통관 적법성 분야 관련 위험동향정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내
공인기준 및 법규 준수 점검·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기준 이행의 적정성 및 법규 준수 취약분야와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 ● 점검결과를 업체에 통지하고 법규 준수(공인기준)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을 권고 ● 개선계획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의 일정 및 내용의 보완을 권고
기업프로파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공인기업에 대한 심사 및 관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 프로파일을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구조, 사업장, 연락처, 재무현황 2. 취급품목, 수출입내역, 거래·결제형태, 주요거래 당사자 등 3. 분야별 법규 위반내역, 오류사항 및 세관조치 4. 내부통제시스템 및 안전관리 관련 세부현황 5. 취약분야 및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진단, 평가 6. 법규 준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현황 7. 그 밖에 공인기업의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변동사항 등 모니터링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사항 보고 및 정기 자체평가서의 점검
보정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되 주기적 정보분석에 의해 자체적으로 심사대상 선별 ● 오류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업체에 안내

자료: 강성훈 외, 『AEO 공인기업 사후관리제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기업상담전문관(AM)은 업체별 1명 지정 운영이 원칙이며, 업체규모,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 기업상담전문관과 기업상담전문관 업무를 보조하는 심사직원으로 구성된 기업상담전문관 전문팀(AM Team)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현재 종합심사직원은 전국 세관에 7팀 3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AEO 사후관리를 위한 기업상담전문관 지원팀은 4팀 16명임⁴⁴⁾
 - 서울본부세관의 경우 AEO 8개에 AM 5명 지정, 부산본부세관의 경우 AEO 1개 AM 1명 지정, 인천본부세관은 AEO 3개에 AM 2팀 지정함
-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기업상담전문관의 역할에 정산업체의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확인 및 점검이 추가됨⁴⁵⁾
 - 수입세액정산제도가 신설되면서 위험정보 제공, 사전검토, 정산보고서 검토, 처분위상정, 종합강평, 정산결과 통제 및 지시 등이 추가됨⁴⁶⁾
 -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가 제출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심사하고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를 정산업체에 통지함
- 기업상담전문관은 위험정보 분석 등을 위해 정산신청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현장견학을 실시할 수 있음
 -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에 따름
 - 자료제출범위, 시기, 횟수 등은 정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함
- 또한 정산내역의 위험정보를 분석하고 위험정보 분석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관세청과 협의함

44) 관세청, 『관세연감』, 2016

4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2017. 4. 1. 개정>

46) 송선옥, 「한국 관세청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9

- 정산보고서 제출만료일 2개월 전까지 정산업체에 위험정보분석을 제공함
 - 위험정보 제공시기, 횟수 등은 정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정산보고서의 작성내용, 확인관세사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회의(컨설팅)를 실시함
 - 사전 검토회의를 통해 정산업체와 충분한 이견조율 필요

-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정산사항, 추가 검토할 사항 등을 구분하여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함
 -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준용
 -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사전에 관세청과 협의함

-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결과 통지 전 수입세액 정산결과, AEO 공인 유지에 따른 통관 세제 혜택 등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함

-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세액 정산결과통보서를 정산업체에 통지함

-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⁴⁷⁾를 정산업체에 통지하며 통보서는 조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함
 - 과부족 세액이 확정되는 사안의 경우 보정·수정신고·경정청구 내역
 -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보류사유 및 향후 계획 등
 - 사전심사, 질의 등이 필요하거나 진행중인 경우 조치할 사항 등
 - 기타 관세행정 측면에서의 기업의 위험요소 등 컨설팅 사항

47) 부록III 제18호 서식 참조

-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

나. 확인관세사

- 세관은 제도의 객관성을 위해 검증을 통해 관세사를 개입시킴
 - 정산업체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의 정확한 검증 및 성실한 납세를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의 검증 확인을 받아야 함⁴⁸⁾
- 정산보고 확인관세사는 최소 2인 이상 선임해야 하며, 정산업체에 소속된 관세사는 선임할 수 없음
 - 정산업체를 위해 「관세사법」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신고 및 환급청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신고인 관세사 또는 기타 수입세액 정산보고 확인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선임이 불가함
 - 관세사를 선임하는 경우 제2항 제2호의 신고인 관세사와 동일한 사무소 또는 법인에 소속된 관세사는 50%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음
- 관세사의 정산보고서 확인업무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관세사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며,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세원심사과장, 법인심사과장, 기획심사팀장 중 위원장이 5인의 위원을 지정함
- 위원회는 세관장이 제출한 관세사 평가점수 등을 참고하여 정산보고서 확인업무 제한 여부, 제한기한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함

48) AEO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3(정산보고의 확인)

- 관세사는 기업의 영업비밀 누설 등 보안준수 의무위반 여부, 관세사 시장질서 문란행위 여부, 기타 특이사항 등에 대해 검증함
- 선입관세사는 검증과정에서 직접 검토한 내용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 주요 점검사항, 점검방법, 검토서류 등이 포함됨
- 정산보고서를 검토하는 관세사는 최소 2인 이상 선임해야 함
 -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⁴⁹⁾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관세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관세사에 대하여 수입세액 정산보고 확인업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은 최대 2년 이내로 함
 - 시장질서 문란행위 관세사
 - 기업의 영업비밀 누설 등 보안준수 의무 위반 관세사
 -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은 관세사
 - 기타 사유로 관세사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관세사

〈표 II-7〉 확인관세사 체크리스트 예시

대분류	소분류	점검사항 (체크포인트)	검증방법	검토서류	결과
세액	반입 대상 원재료	반입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1. 제품별 원재료내역서 검토 2. 신고물품과 비교	엑셀파일 별첨	수정신고 필요
세액	잉여 물품	제품별 잉여물품이 발생하는지	1. 제품별 잉여불품 발생 여부 검토 2. 수출/잉여 비교	생산수출표 등	
세액	잉여 물품	잉여물품 신고내역	1. 잉여물품 대장 검토 2. 수입신고내역 비교	잉여물품대장	이상없음
절차 준수여부	장외 작업	장외작업 신고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장외작업 종료후 물품 반입여부 등	계약서 장외작업신고서	

자료: 관세청 심사정책과,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7

49) 부록 제16호서식

Ⅲ. 미국의 정산 및 수입자 자율심사제도

1.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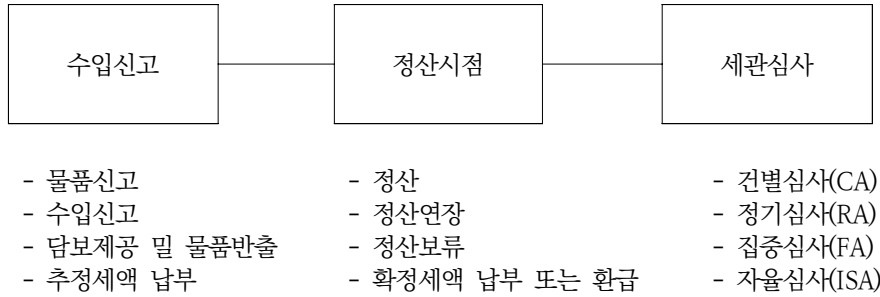
- 미국의 수입자 자율심사(Import Self Assessment, 이하 ISA) 제도는 미국 관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의 수입자들의 수입거래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심사기법 중 하나임
 - 미국의 관세 심사기법은 건별감사(CA), 통관 적법성심사(RA), 기업 감사(FA), 수입자 자율심사(ISA)로 나뉨
 - ISA는 C-TPAT 공인기업만이 가입할 수 있어 저위험 수입자를 대상으로 함

- 또한 미국의 정산(Liquidation)은 관세 확정을 위한 통관절차의 하나로서, 수입신고 시 납부된 추정관세를 1년의 기간 안에 세관의 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세의 신고납부가 성립되므로 수입신고시점이 관세의 확정시점이 되며 납부 후 세액오류에 대해서는 보정·수정신고 또는 세관의 경정을 통해 세액의 재확정이 가능함

- 우리나라의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AEO 공인기업(수입부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심사기법의 일종으로 본다면 자율심사(ISA)와 비교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의 정산 관점에서 본다면 정산(Liquidation)과 비교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장에서는 미국의 정산과 자율심사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그림 III-1] 미국 통관절차 흐름에서 정산과 ISA의 위치



자료: 저자 작성

2. 정산제도(Liquidation)

- 우리나라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AEO 공인기업에 한해 세액확정의 효과를 신고납부 시점이 아닌 세액 정산시점으로 유예시킨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산(Liquidation)과 유사함⁵⁰⁾
- 우리나라 AEO 수입부문 공인기업은 신고납부 시 확정된 세액을 자체심사한 뒤 발생한 세액오류는 세관장의 경정없이 보정 또는 수정 신고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산 시점은 세액의 2차 확정 시점이 됨
- 따라서 본 장에서는 미국의 정산제도의 개요와 세부사항 등을 살펴보고 국제비교 항목을 도출하고자 함

50) 현재 세액의 확정절차는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시기)와 제38조(신고납부)에 따라 수입신고 시 과세물건의 확정과 관세납세가 이루어져 세액이 1차 확정되며 납부 후 세액오류 발생 시 납세자의 보정·수정신고 및 세관장의 경정을 통해 세액이 2차 확정됨

가. 제도 개요

1) 법 근거

- 미국의 관세와 관련된 법규정은 US CODE(United States Code)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이 있음
- US CODE상 정산(Liquidation)은 제19편 관세(Customs Duties)의 제4절(Tariff of 1930)의 부제 제3편 (Subtitle III)의 제3장(Prat III)에 규정되어 있음
 - 세부내용은 ① 감평(평가), 분류 및 정산 절차 ② 세관서비스에 의한 자발적인 재정산 ③ 정산의 제한, 그리고 ④ 관세와 제세금의 납부 등이 있음

[그림 III-2] US CODE상 정산의 위치

US CODE
:
19 Title (Customs Duties)
:
Chapter 4 (Tariff of 1930)
:
Subtitle III (Administrative Provisions)...
:
Part III (Ascertainment, Collection, and Recovery of Duties)
:
- § 1500 (Appraisalment, classification, and liquidation procedure)
- § 1501 (Voluntary reliquidations by Customs Service)
- § 1504 (Limitationon liquidation)
- § 1505 (Payment of duties and fees)

자료: 저자 작성

- 미국 CFR상 관세 정산(Liquidation of Duties)은 제19편 관세(Customs Duties)에서 관세청, 국토안보부 및 재무부 등에서 관할하는 제1절 (Chapter)의 제159장(Part. 159)에 규정되어 있음

- 세부내용은 ① 정산의 범위 ② 과세표준의 단위 ③ 외국통화의 변환 ④ 특별 관세(정산보류대상) ⑤ 정산보류 및 ⑥ 지속적인 덤핑과 보조금의 상쇄 등이 있음

[그림 III-3] CFR상 정산의 위치

CFR
:
19 Title (Customs Duties, Apr.1, 2008)
:
Chapter 1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the treasury)
:
Part 159 (Liquidation of Duties)
:
- § 159.0 (Scope)
- §§ 159.1 - 159.12 (General Provisions)
- §§ 159.21 - 159.22 (Weight, Gage, and Measure)
- §§ 159.31 - 159.38 (Conversion of Foreign Currency)
- §§ 159.41 - 159.47 (Special Duties)
- §§ 159.51 - 159.58 (Suspension of Liquidation)
- §§ 159.61 - 159.64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자료: 저자 작성

2) 수입통관절차와 정산⁵¹⁾

- 미국의 일반 수입통관(Entry for Consumption)의 절차는 반입신고(Entry), 신고납부(Entry Summary and Deposit), 그리고 정산(Liquidation)의 3단계를 거침
- 물품(반입)신고(Entry)는 세관에서 수입물품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 수입자의 담보제공이 완료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절차로, 수입의 합법성, 제세금의 징수확보 및 수입통계 작성이 주목적임

51) 김태인, 「한국과 미국의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절차 비교분석」,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09.2, pp.146~147

- 신고납부(Entry Summary and Deposit)는 수입자의 추정관세의 납부와 서류제출의 절차를 통칭함
 - 수입자는 물품 반출 후 각각의 물품신고서(Entry)에 대응하여 추정된 세액을 납부(Deposit)하고 해당 근거서류를 세관에 제출함

- 정산(Liquidation)은 수입자가 미리 추정하여 납부한 관세를 실제 확정하는 과정을 말하며 물품신고로 발생한 관세 또는 관세 환급의 최종 계산 및 확인을 의미함(CFR 159.1)
 - 정산의 목적은 세관이 수입자에게 납부세액 오류를 자기 시정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임

나. 제도 절차

- (신고납부) 수입자는 물품 도착 후 15근무일 이내 물품신고서를 제출하고, 물품신고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 납부할 관세와 기타 제세금을 추정하여 수입신고서 제출과 함께 납부하여야 함(USC 1505, CFR 142.12(b))
 - 주기적인 물품신고가 아니거나, 물품이 보세창고에 입고 또는 보세운송을 하는 경우 및 관세담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입자는 12영업일 이내 추정관세를 납부하여야 함

- (정산대상) 모든 수입물품(all entries)은 정산의 대상이 됨(CFR 159.2)

- (정산기간) 물품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세관은 수입신고된 모든 물품에 대해 정산절차를 거침(USC 1500, CFR 159.1, CFR 159.2)
 - 세관은 수입신고서 심사(Entry Summary Review)를 통해 납부세액을 최종 확정함
 - 세관은 상기 정보를 근거로 서면심사를 진행함

- (정산의 방법) 세관은 원가명세서(statement of cost), 상업송장 상 원가내역, 신고서, 여타 다른 서류상의 생산비용등 모든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확보하여 수입물품의 가치를 확인하고 산정함으로써 최종 관세평가액을 결정함(USC 1500, CFR 159.1)
- (정산항목) 세관은 정산 시 납부세액의 정확성, 신고오류, 법령 적용의 오류 등 정산사항을 확인하여야 함(USC 1500)
 - 납부세액 정산 시 세관은 ① 적용할 수 있는 관세율과 품목분류 ② 부과된 관세의 최종금액 ③ 증가되거나 추가된 관세 및 요금 또는 과다납부한 관세, 요금 및 세금 등, 그리고 ④ 수입물품신고금액과 조정금액을 확인하여야 함
 - 신고오류란 수입자의 사무적인 착오나 오해 및 기타 부주의한 사항을 포함함
- (재정산) 정산된 관세라도 신고오류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초 정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재정산(reliquidation)이 가능함 (USC 1501)
 - 재정산 사유는 신고자의 사무적인 착오, 오해 및 부주의, 적용법령의 오류 및 수입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음
- (세액납부) 세관은 정산 또는 재정산으로 결정된 증가 또는 추가된 관세 및 수수료를 이자와 함께 징수하거나 환불될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해줘야 함(USC 1505(b))
 - 추가관세의 납부는 정산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환급은 정산 또는 재정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됨
- (정산연장) 정산기간의 연장은 일정 사유에 따라 최장 4년까지 가능함(USC 1504(b))
 - 세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나 수입자가 연장을 요청하고 합리적 이유를 제시한다면 1년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정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정산보류) 세관은 수입자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정산 시행이 어렵거나 서류제출 담보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정산을 보

류할 수 있음(USC 1504(c), CFR 159.54)

다. 기타 내용

- (정산통지) 세관은 관세 정산이 확정되면 수입자에게 통지하고 세관 게시판에 해당 사항을 공고함(CFR 159.9)
- (이자) 만약 정산하여 추가관세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관세에 더하여 추정관세 납부일로부터 정산된 일자까지의 기간에 국세청이 분기별로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가 부과됨(USC 1505(c), CFR 24.3(a))
- (이의제기) 수입자는 정산 또는 재정산과 기타 세관의 결정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USC 1514, CFR 159.9)
 - 이의제기는 서면 또는 EDI로 청구 가능함
- (벌칙) 정산에 대하여 사기성 위반, 중과실 위반 및 과실 위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처벌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음(USC 1592(c), CFR 162.73(a))

3.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

- 우리나라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AEO 공인기업 스스로 수입거래 위험을 심사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와 비교할 수 있음
 - ISA의 일반적인 심사항목은 내부통제시스템으로서 우리나라 AEO 공인기업의 정기 자체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시스템과 유사함

- 따라서 본 장에서는 미국 ISA의 설립배경, 개요, 절차, 세부사항 등을 살펴보고 국제비교 항목을 도출하고자 함

가. 배경⁵²⁾

- 미국 관세청(CBP)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약 7년간 수입건별 포괄심사(Compliance Assessment, CA)를 시행한 결과, 우수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의 법규 준수도 (compliance)가 높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함⁵³⁾
 - 포괄심사(CA)란 1995년에 도입된 심사방식으로 심사대상 기업의 모든 거래분야와 수입신고 건별(Transaction)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식임

-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심사제도는 2001년 10월, 건별(Transaction)에서 기업별 (Account) 단위로 심사하는 기업심사(Focused Assessment Program, FA)로 전향하게 됨⁵⁴⁾
 - 기업심사(FA)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과 내부통제 과정 자체를 심사하는 것으로, 기업의 무역위험분야를 심사함⁵⁵⁾
 - 1단계로 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전평가조사(Pre-Assessment Survey, PAS)를 수행
 - 위험이 발견되면 법규 준수도 평가(Assessment Compliance Testing, ACT)⁵⁶⁾를 2단계로 시행함

52) US CBP General notice, 4820-02-P, 2002.6.13. 및 한국관세무역개발원, 「AEO 심사기법과 확산방안 연구용역」, 2009.12, pp.65-67 참고하여 저자 작성

53) 송선욱, 「미국 관세심사의 기업내부통제시스템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3호, 2009.6, p.35

54) 송선욱(2009.6), p.36

55) 한국관세무역개발원, 『AEO 심사기법과 확산방안 연구용역』, 2009.12, p.73

56) 법규 준수도 평가는 거래가격, 품목분류, 관세 면세와 감면,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환적, 지식재산권, 수량, 자유무역지역, 산정가격, 관세무역 관련 기타 항목 등을 포함함

- 한편, 1993년 통과된 세관 근대화법(Customs Mod Act)⁵⁷⁾에 따라 관세청(CBP)은 수입자가 스스로 미국 무역법 준수를 극대화하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수입물품의 통관을 보다 용이하게 재설계하고자 노력하였음
 - 1998년 4월 24일, 미국 관세청(CBP)은 수입자 법규 준수 모니터링 프로그램(Importer Compliance Monitoring Program, ICMP)에 대한 테스트 수행계획을 공고⁵⁸⁾하였으나 실제 참여한 업체는 세관의 예상보다 적었음
- 이에 2002년 4월 30일, 관세청(CBP)은 수입업자의 무역법규 준수도 제고를 위해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라는 민관 공동 협력시스템을 도입함⁵⁹⁾
 - ISA는 세관의 감독 축소와 함께 수입자의 자발적인 위험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은 기업의 무역법규 준수도 차이에 따라 기업심사(FA)와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로 심사기법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존 모든 수입 거래건별 심사를 진행하던 건별 심사(CA) 방식에서 세관이 판단한 법규 준수도 등급에 따라 고위험 수입자에 대한 심사방식인 집중심사(FA)와 저위험 수입자에 대한 심사방식인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로 이원화됨

나. 제도 개요

-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관세청(CBP)은 현대 세관법(Mod Act)을 통해 업체가 미국법을 최대한 준수함과 동시에 수입과 반입허용 물품의 축진을 도모하고자 세관 서비스를 개편하였음

57) NAFTA 이행법의 제4장(Customs Modernization and Informed Compliance Act(H.R. 3935))

58) Federal Register(63 FR 20442)

59) Federal Register(67 FR 21322)

- 이러한 목적하에, ISA는 무역 관련 위험을 업체가 평소에 자율심사함으로써 세관의 심사 업무량과 무역업체의 관세심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02년 4월 도입됨
 - ISA는 물류보안제도인 미국의 대테러 세관-기업 파트너십(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이하 C-PAT)의 보완 및 지원 제도로 등장함
 - 두 제도는 민관 공동협력과 자율(self-governing)을 전제로 상호 맞춤형지원서비스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C-TPAT은 화물안전기준에 대한 보안제도(supply chain security partnership)임에 반해 ISA는 무역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심사제도(trade compliance partnership)로 차이가 있음
 - ISA의 특징은 업체가 무역법규와 관련된 오류는 자진수정함으로써 세관의 심사량 감소를 도모하고 평소 관세 관련 거래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자율점검을 통해 법규 준수도를 관리함으로써 관세심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임

- 강력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가진 수입자가 세관 법률 및 규정을 최고 수준으로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ISA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법규 준수도(Compliance)가 높은 저위험 업체가 됨⁶⁰⁾
 - ISA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우수한 업체가 무역 관련 거래를 자율심사하고 해당 거래에 오류가 없음을 입증하는 영업체계를 갖추도록 독려하는 시스템임

- 따라서 ISA 이용 가능 업체는 무역거래 관련 업무의 정확성을 입증할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⁶¹⁾을 갖춘 업체여야 함
 - ISA 참가자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관세율을 신고할 때 합당한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으며(우리나라의 통관 적법성 항목), 관세청(CBP)은 수입자에게 ISA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알릴 책임이 있음⁶²⁾

60) US CBP General notice, 4820-02-P, 2002.6.13., p.3

61) ISA에서 말하는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이란 특정 목표가 달성되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기업의 이사회, 경영진, 그리고 기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Continuous Built in Process)을 말함.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09.12), p.74

- 현재 C-TPAT 회원인 모든 수입자는 자율심사양해각서(ISA MOU)에 서명하고 조사표 (questionnaire)를 작성함으로써 ISA 참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이후 세관은 신청인이 ISA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심사 한 뒤, 적절한 수입자와 ISA MOU 에 상호 서명함으로써 수입자와 세관 간의 파트너십을 수립하게 됨
- 수입자 자율심사의 이용 신청은 2002년 6월 17 일부터 접수가 시작됨

다. 자격 요건

- ISA 참가기업의 자격요건은 ① 기본요건이 충족되면 ② ISA 양해각서(MOU)와 조사표 (Questionnaire)를 관세청에 제출하여 ③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 여부와 함께 신청서 검토를 받고 이후 승인이 되면 ④ 매년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1) 기본요건⁶³⁾

- ISA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
 - C-TPAT의 모든 이익을 적용받는 일원일 것
 - 미국에 주소를 둔 수입자로서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전 2년간의 수입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적용되는 모든 세관법과 관련 규정을 따를 것에 동의하여야 함
 - 세관업무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내부통제시스템과 같은 영업기록체제를 설계하고 유지하여야 함⁶⁴⁾

62)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 2011.06, p.1

63) US CBP General notice, 4820-02-P, 2002.6.13., p.3

64) 영업기록체제는 내부통제를 설정하고 문서화하며 이를 이행하고 위험에 기초를 둔 주기적인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한 시스템이어야 함. 테스트 결과를 3년간 유지하여야 하고, 세관 요구 시 제출이 가능해야 함. 또한 내부통제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행과 재무기록에서부터 세관신고서까지 감사기록(audit trail)을 유지하여야 함. 자료: 한국재정학회, 『기업심사의 신뢰성에 미치는 요인분석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0.12, p.69

- ISA 조사표(ISA · Questionnaire)와 양해각서(ISA MOU)에 포함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동의하고 서류 작성을 완료해야 함
 - 내부통제를 수립, 문서화 및 실행할 것
 - 위험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해 기간별 테스트를 실행할 것
 - 내부통제에 대해 적절한 조정을 할 것
 - 회사 검토로 확인된 중대한 오류를 적절한 고지를 통해 세관에 통보할 것⁶⁵⁾
 - 재무기록과 세관 신고서에 대한 감사 자료를 유지할 것
 - 5년간의 테스트 결과를 유지하고 세관의 요청에 따라 테스트 정보를 제공할 것
 - ISA 업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연례보고서(notification)를 제출하고, 수입자가 자율심사양해각서(ISA MOU)에 기재된 대로 해당 제도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
- ISA 이용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야 함

2) ISA 양해각서(MOU)와 조사표(Questionnaire)의 제출

가) 양해각서(MOU)⁶⁶⁾

- ISA 양해각서(MOU)는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통해 높은 법규 준수도를 유지하고자 수입자와 관세청(CBP)의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민관 공동 협정임
- ISA 양해각서의 신청단위는 하나의 부서 또는 ISA 참가 자격을 지닌 각 부서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단, 개별 사업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양해각서(MOU)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65) ISA 참가자는 사전신고(prior disclosure), 재정정(reconciliation), 사후신고정정(post-entry adjustment), 추가적인 고지 또는 제공된 관세청(CBP)의 방법 등에 의해 적절한 고지를 하여야 함

66)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 p.4 2011.6 및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Appendix C』, 2011.6

모든 접미사(suffixes)와 함께 완전한 기업명과 수입자등록번호(IOR)를 기재하여야 함

- ISA에 이미 참가 중인 기업은 신규 사업부에 대한 추가 ISA 승인을 기존 양해각서에 추가하여 획득할 수 있음
- 기존 양해각서(MOU)에서 다루지 않은 사업부를 추가하는 경우 기업은 현재 ISA 참가 승인된 사업부에 추가할 신규 사업부의 수입자등록번호(IOR) 및 적용가능한 모든 접미사(suffixes)를 반영한 수정 양해각서(MOU) 원본을 관세청(CBP)에 제출해야 함

나) 조사표(Quetionnaire)⁶⁷⁾

- ISA 조사표(Questionnaire)는 수입자가 ISA 신청 시 관세관련 법률과 규정의 합당한 준수를 위해 내부 통제를 문서화하고 이행했는지 확인하도록 도움을 주는 일련의 질문 목록임
- ISA 조사표는 신청자가 실제로 ISA 준비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음
- ISA 조사표의 모든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참가자는 ISA 프로그램에 참가할 준비가 된 것으로 간주됨
- 만약 ISA 조사표에 대한 응답이 입증되지 않으면 ISA 신청 절차에 불필요한 지연 또는 승인 거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ISA 참가신청서를 심사하는 ISA 팀은 ISA 조사표를 통해 참가자의 수입거래 현황과 내부통제 구조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
- ISA 조사표는 ISA 참가신청서 검토 및 신청서검토회의(Application Review Meeting,

67)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 2011.6, p.4 및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Appendix D』, 2011.6

ARM)에서 다음의 과정을 통해 활용됨⁶⁸⁾

- 응답 완료된 ISA 조사표를 토대로 ISA 팀은 신청서검토회의(ARM)를 계획함
- 세관 심사자 등으로 구성된 ISA 팀⁶⁹⁾은 조사표의 응답내용과 첨부파일, 문서화 정책 및 절차, 자체심사 계획 및 기타 문서를 검토하고 분석함
- ISA 팀은 ISA 참가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신청서검토회의(ARM) 일정을 조율하고 현장방문예정을 알림
- 신청서검토회의(ARM) 기간 동안 ISA 참가신청자는 응답한 ISA 조사표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해야 함
- ISA 참가신청자는 신청서검토회의(ARM)가 이뤄지기 몇 주 전에 신청서 검토항목을 제공받으므로 사전 준비를 하여 ISA 팀에게 구매주문부터 결제완료까지 전체 수입 흐름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ISA 팀은 수입 거래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내부통제시스템과 같은 영업기록시스템을 회사가 유지하는지 확인함

□ ISA 참가자는 ISA 조사표와 관련 첨부자료를 이메일⁷⁰⁾ 또는 콤팩트 디스크와 같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3)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가) 개요⁷¹⁾

- 관세청(CBP)는 수입자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내부통제 개발가이드(부록 F)는 내부통제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구성 요소

68) ISA 참가신청서 검토 및 신청서검토회의(ARM) 과정에 대한 내용은 「마. 제도 절차」에서 확인 가능함

69) 세관 심사자, 국가기업상담관(NAM) 및 컴퓨터 심사 전문가등

70) tppb-isa@dhs.gov

71)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 2011.6, p.5

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며 소규모 수입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함

- 내부통제 관리 및 평가(부록 G)는 보다 자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서 복잡한 사업 구조 또는 복잡한 세관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대형 수입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함

- 수입자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기업의 관리자와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자는 관세청의 내부통제시스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얼마나 잘 설계되었고 작동중인지 파악할 수 있음

- 내부통제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에 대한 내용은 비록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임무, 목표, 목적 및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래의 이유로 그 내용이 동일할 수 없음

- 회사의 임무, 목표 및 목적의 다양성
- 환경과 운영 방식의 차이
- 회사 조직의 복잡성 정도의 차이
- 회사 역사와 문화의 차이
- 회사가 직면하고 완화하고자 하는 위험의 차이
- 내부통제 시행 시 각 회사의 고유 판단을 적용하므로 각자 상이한 통제 활동을 사용하게 됨

나) 세부내용⁷²⁾

- ISA 참가자는 수입거래내역의 정확성을 시연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⁷³⁾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2가지 방법을 개발하여야 함

72)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Appendix B』, 2011.6, pp.2~3

73) ISA에서 말하는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이란 특정 목표가 달성되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기업의 이사회, 경영진, 그리고 기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Continuous Built in Process)을 말함.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09.12), p.74

- 수입거래 준수를 보증하도록 설계된 내부통제시스템
- ①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기록 ② 수입물품의 결제내역이나 관세청에 보고되는 값이 정확함을 보증하는 수입신고내역의 대체시스템
 - 미국 공인회계사회(AICPA) 회계감사표준 78(Auditing Standards 78)에서 인정한 정의 및 해설에 기초한 내부통제시스템의 프레임워크(frame work)를 개발할 것
 - 수입자가 재무(회계)기록에서부터 관세청(CBP)에 신고하는 가격의 정확성 입증을 위해 필요한 통관비용과 지급 기록에 대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기록을 보유할 것

- ISA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은 내부통제위원회(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COSO)에서 수립한 내부통제모델을 차용하여 설계될 수 있음
- 내부통제위원회(COSO)는 조직 관리방식, 비즈니스 윤리, 내부통제, 기업 리스크 관리, 사기 및 재무보고의 중요한 측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위원회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곳임⁷⁴⁾
- 내부통제위원회(COSO)의 내부통제 프레임워크(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는 기업 및 조직이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공통의 내부통제요소로서 5가지 구성 요소를 소개함⁷⁵⁾
 - 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
 - 위험평가(Risk Assessment)
 - 통제활동(Control Activities)
 - 정보 및 의사소통(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모니터링(Monitoring)

74) 내부통제위원회(COSO)는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 국제재무관리(Financial Executive international), 내부감사기관(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 및 회계사 및 재무 전문가 협회로 구성된 자발적인 민간부문 조직임

75) ISA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 세부사항은 「바. 심사내용」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함

4) 연례보고서(ANL) 제출

가) 개요⁷⁶⁾

- ISA 참가자는 ISA 프로그램의 승인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승인기간 중 조직의 변경이나 자체심사 결과의 제출과 같은 주요내용 보고 목적으로 관세청에 연례보고서(annual notification letter, ANL)를 제출해야 함
- ISA 참가자는 연례보고서(ANL)에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였음을 표기하여야 함
 - 적용 가능한 모든 관세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
 - 다음과 같이 세관거래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유지할 것
 - 내부통제의 5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세관법령 준수의 합리적인 입증을 나타 내기에 적합한 내부통제시스템
 - 거래에 수반된 위험을 기준으로 정기적인 자체심사를 실시(수입자 설계)
 - 3년간의 자체평가 결과를 보관하고 관세청 요청 시 해당 결과를 제공
 -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절히 조정
 - 재무기록(financial records)에서 세관 신고에 대한 심사내용의 검색기능 또는 정확한 값이 관세청에 보고되도록 하는 대체 시스템을 유지
 - 관세청에 적절한 고지를 진행할 것
 -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ISA 책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것
 - 주요 조직변경사항 발생 시 관세청에 긴급 통보할 것

나) 연례보고서 작성지침⁷⁷⁾

- 연례보고서(ANL)의 목적은 ISA 참가자가 ISA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

76)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Appendix B』, 2011.6, p.4

77)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Appendix H』(Annual Notification Letter - Reporting Requirements), 2011.6

족시키고 세관업무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관세청에 알리는 것임

- 주요 변경사항은 회사의 조직이나 직원현황, 상품, 통관대리인(관세사) 또는 무역 프로그램의 변경 등이 있음

□ 연례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⁷⁸⁾

- 회사 조직의 변경사항 요약(합병 또는 사업 분할, ISA 프로그램의 수입자등록번호 추가 또는 삭제 등)
 - ① 신규 수입자등록번호를 추가 또는 ② 합병하거나 ③ 독립적인 수입자등록번호를 가진 ISA 승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ISA 승인 사업부에 추가되며 이 경우 수정된 양해각서(MOU) 원본을 연례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법규 준수 부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사항 변경내용 요약
- 수입거래의 변경 요약(수입물품, 관세청의 무역 프로그램, 원산지 국가, 통관중개인(관세사), 법규준수관리 부서의 조직 구조 등)
-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책·정책 조정사항 및 변경내용 요약
- 위험평가의 결과 요약
- 정기 자체심사 결과 요약
- 관세청에 신고한 사후신고정정 또는 사전신고(disclosures) 내용 요약

□ ISA 참가자는 ISA 프로그램 승인일(국제무역부 관리관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날)로부터 13개월 후 연례보고서(ANL) 원본을 ISA 양해각서(MOU)와 함께 협력프로그램 지부장(the Chief, Partnership Programs Branch)에게 제출하고, 관세청의 국가기업상담관(NAM)에게 사본을 제출해야 함

- ISA 참가자는 연례보고서(ANL)에 ISA 참가자의 위험평가 및 자체심사에 대해 결함이 확인되었을 때 수행한 시정 조치 및 총 요약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78) 해당 내용은 연례보고서의 최소 요구사항이며 필요하다면 다른 주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연례보고서(ANL)은 최초 제출일 이후 매 12개월마다 동일한 과정을 통해 제출되어야 함
 - 연례보고서(ANL)의 최종서명자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회사대표자 또는 이와 동등한 사람이어야 함
- ISA 참가자는 연례보고서를 이메일⁷⁹⁾ 또는 문서화하여 협력프로그램 지부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해야 함

라. 혜택⁸⁰⁾

- ISA 참가자는 ① 포괄감사 제외 ② 국가기업상담관(NAM)의 지정 ③ 수출입통관자료 무료제공 ④ 벌칙의 완화 등 크게 4가지의 혜택을 제공받음

가) 포괄감사(Comprehensive Audit, CA) 제외

- ISA 참가자는 국가기업상담관(NAM)과 무역준수와 관련하여 훈련, 지원 및 개선사항을 위해 상호 협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인 현장 심사 또는 감사를 받지 않음⁸¹⁾
 - 그러나 참가자는 이미 확인된 무역 준수 위험과 관련된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현장 심사 또는 정기 감사를 받을 수 있음
- 수입자는 기업집중평가를 위해 설계된 통관 적법성 심사(Regulatory Audit) 대상에서 제외됨⁸²⁾
 - 통관 적법성 심사란 국제무역에 관련하여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법규를 준수하

79) tppb-isa@dhs.gov

80)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Appendix A』(Program Benefits), 2011.6

81) US CBP General notice, 4820-02-P, 2002.6.13, p.7

82) 성남길 · 김영춘 · 조영태 · 안이한 · 신태철,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제도의 해외 사례 조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 2009.12, p.51

도록 요구받는 주요 수입자와 기타 업체를 심사하는 것으로 세관의 관세 심사종류 중 하나임⁸³⁾

- 만약 수입자가 환급 절차와 외국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s)를 ISA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면 해당 제도 또한 통관 적법성 심사에서 제외됨

나) 국가기업상담관 지정

□ 모든 ISA 참가자에게는 관세청(CBP)의 공식 담당자인 국가기업상담관(NAM)이 배치됨

- 기업상담관(AM)제도는 관세청(CBP)이 법규 준수 이행률이 낮은 무역업체의 법규 준수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자료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반복적인 오류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자 창설됨⁸⁴⁾

- 1993년 제정된 세관 현대화법(the customs modernization ac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97년부터 시행됨

- 기업상담관(AM)들은 무역위험의 분석, 접근을 위해 시스템적으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하고, 자율적 법규 준수 제고를 위해 기업이 개선조치를 하도록 지원함

□ 국가기업상담관(NAM)의 핵심적인 책임범위는 ISA 참가자의 법규 준수와 잠재 위험에 대해 모니터링, 컨설팅, 식별 및 분석한 항목을 관리·감독하는 것임

- 국가기업상담관은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제점을 탐색하고 ISA 기업과 관세청 간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그러한 결과를 ISA 기업과 공유함

- 또한 ISA 참가자의 일관성 있는 활동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며 참가자와 협력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해결함

83) US CBP, "Audits/Regulatory Audit", <https://www.cbp.gov/trade/programs-administration/audits>, (검색일자: 2017.7.3.)

84) 강성훈·김미영·김다량, 『AEO 공인기업 사후관리제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 p.67

- 또한 국가기업상담관(NAM)은 연례보고서(ANL)의 정확성 검토와 ISA 참가자와 관세청 간 연락망 역할을 겸함
 - ISA 참가자가 제출한 연례보고서(ANL)가 관세청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완전하게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함
 - 수입거래 관련 쟁점사항, 질문사항 및 우려사항이 적시에 관세청 등 필요한 기관으로 전달하기 위해 관세청과 ISA 참가자 간의 연락망 역할을 함

- 국가기업상담관(NAM) 미국의 총 10개주에 고루 설치된 CEE 기관(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에 배치되어 근무중임⁸⁵⁾
 - CEE 기관은 2011년, C-TPAT과 ISA 참가기업의 세관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운영기관임
 - 부족한 세관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물품 거래기준(transaction)이 아닌 산업군 또는 업체(account) 기준으로 세관업무를 처리하여 신속성과 통일성을 도모함
 - 2014년 기준 CEE 기관에는 국가기업상담관(NAM)을 비롯하여 법률자문관, 수입전문관, 수입신고(Entry)전문관, 정보분석관, 물류보안 전담직원(SCSS), 심사전문관 등 다양한 포지션을 지닌 요원이 근무하고 있음⁸⁶⁾

- 2009년 11월 기준 국가기업상담관(NAM)은 상위 1,000개의 수입업체 중 실질적으로 550개 업체를 관리하므로 1인 약 14개 업체를 전담함⁸⁷⁾

다) 수출입 통관자료 제공

- 모든 ISA 참가자는 분기별로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수입자등록번호(The importer of record, IOR)와 관련된 수입거래에 해당되는 수입자무역활동(Importer Trade

85) 강성훈 외 2인(2015.12), p.69

86) 김재일,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고도화를 위한 AEO제도 효율화 방안』, 관세청, 2014, p.89

87) 성남길 외 4인(2009.12), p.37

Activity, ITRAC) 자료 사본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 데이터는 수입 활동의 검토 및 분석과 위험 영역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 ISA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수입자등록번호(IOR)에 대한 수입자무역활동(ITRAC) 자료는 일정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제공받을 수 있음

○ 해당 자료는 전자디스크(CD-ROM)로 발송되며 데이터베이스의 행에 따라 미화 250달러에서 300달러 사이의 처리 수수료가 부과됨

라) 벌칙의 완화

□ ISA 참가자가 민사 처벌(civil penalties)이나 벌금(liquidated damages) 부과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처분경감 대상에 해당되어 사건이 처리됨⁸⁸⁾

○ ISA 제도 참가 자체가 법에 명시된 벌칙이나 법규 미준수를 용인한다는 것은 아니며, ISA에 참가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무역 법규 준수를 향상시킨 수입자는 민사 처벌 또는 벌금 등의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한 벌칙을 경감받을 수 있다는 것임⁸⁹⁾

□ 또한 관세청(CBP)은 ISA 참가자가 미국연방법의 관세파트(US. Code Title 19; CUSTOMS DUTIES)와 관련된 법령⁹⁰⁾ 위반의 징후를 발견하면 그러한 오류를 서면으로 통보해줌

88) 청산된 손해(liquidated damages)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의 일종으로 보아 벌금으로 해석함. 원문: Punitive damages are awarded to punish a wrongdoer. There are other modifying terms placed in front of the word damages like "liquidated damages," (contractually established damages) and "nominal damages" (where the court awards a nominal amount such as one dollar). 자료: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wex/damages>, (검색일자: 2017.6.22.)

89)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Appendix C』(Memorandum of Understanding), 2011.6, p.1

90) 미국연방법의 관세파트(US. Code Title 19; CUSTOMS DUTIES) 제1592조 사기, 중과실 및 업무태만에 대한 벌칙(Penalties for fraud, gross negligence, and negligence) 또는 제1593a조 허위의 관세 환급 청구에 대한 벌칙(Penalties for false drawback claims)

- 수입자는 관세청(CBP)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벌칙위반을 사전신고하여 예상치 못한 벌칙이나 가산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⁹¹⁾
 - 단 관세청(CBP)에서 이미 조사 중이거나 허위로 사전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마) 기타 혜택

- (가이드라인 제공) 관세청(CBP)은 ISA 참가자에게 무역법규 준수 문제, 각종 자료 분석, 위험 평가, 자가 테스트 및 내부통제와 같은 다양한 영역의 지침을 제공함
 - 올바른 지침 제공을 위해 ISA 참가자에게 지정된 국가기업상담관(NAM)이나 관세청(CBP)에 이메일⁹²⁾로 문의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음
- (통합기업으로 적용) ISA제도는 ISA MOU에 명시된 수입자등록번호에 따라 통합기업(multiple business units) 형태로도 가입이 가능함
 - ISA 참가자는 추가 사업부를 ISA제도에 포함시키려면 이를 반영한 양해각서(MOU)를 다시 제출해야 함
 - 또한 추가할 신규 사업부가 일부 결점이 있거나 자유무역지대(FTZ) 업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ISA 조사표와 해당 사업부의 세관업무에 대한 절차를 반영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제출해야 함
- (공식연락망 제공) ISA 참가자는 ISA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질문, 우려 사항 및 제안 사항을 지정된 국가기업담당관 등 주요 연락담당자와 논의할 수 있음
- (사업 안전성을 보장) ISA 참가자는 ISA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신뢰 가능한 내부통제

91) 미국연방규정집의 관세파트(CFR 19; Customs Duties)의 제162.74조 사전신고(Prior disclosure)에 의함

92) tppb-isa@dhs.gov

- 시스템을 통해 무역거래의 법규 준수를 보장받으므로 사업 안정성이 향상됨
- 관세청(CBP)는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수입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 가능한 자료와 세관의 자원을 제공함

마. 제도 절차

- ISA 프로그램의 승인 절차는 관세청(CBP)에 의해 이뤄지며 ① ISA 참가기업의 최초 ISA 신청서를 내부적으로 심사한 뒤 ② 세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ISA팀에 의해 ISA 신청서 검토 회의를 가진 후 ③ ISA 참가 승인, 후속평가 또는 승인거절이 결정됨
- 이후 ④ ISA 참가기업의 갱신 심사와 ⑤ 갱신 심사 결과에 따른 승인 취소의 절차를 밟음

1) 최초 신청서 심사

가) 내부통제 심사⁹³⁾

- 세관심사원 등으로 구성된 ISA 팀은 참가신청기업이 ISA 프로그램을 이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의 내부통제를 평가함⁹⁴⁾
- 참가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항목으로는 ① 내부 통제의 문서화 ② 내부통제의 논리성 ③ 내부통제의 합리적인 완성도 ④ 확인된 위험상황에서 내부통제가 무역법규 위반을 방지하거나 탐지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등이 있음
- 내부통제시스템은 개별 항목과 같이 독립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으며, 다음 항목과 함

93)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 2011.6, p.6

94) ISA팀은 세관 심사원, 전산심사 전문가 및 신청서상 기재된 국가기업상담원(National Account Manager, NAM)으로 구성됨

계 하나의 묶음으로 평가를 받음

- 수입통관에 대한 정보와 통관흐름에 대한 이해
- 수입통관 중 발생 가능한 문제를 확인
- 내부통제가 수입통관 중 발생 가능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
- ISA 조사표(ISA questionnaire) 응답 결과에 대한 평가 및 ISA 참가기업의 수입정책과 수입절차에 대한 입증내용을 평가

가) ISA 조사표 검토

- 세관은 ISA 조사표(ISA Questionnaire)의 응답결과를 통해 신청자가 위험 평가와 자체심사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⁹⁵⁾
 - 경우에 따라 세관의 종합심사팀(a Customs multi-disciplinary team)은 신청자를 방문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는 등 회사와 협의할 수 있는데 이는 감사가 아니며 광범위한 테스트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세관과 회사 간 협의의 목적은 신청자가 자체 평가의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의 협조와 훈련을 제공하는 것임

2) 신청서 검토회의⁹⁶⁾

- 신청서 검토회의(Application Review Meeting, ARM) 전, ISA 팀은 신청자의 수입 거래와 수입과 관련된 활동 분석을 위해 다음 항목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함
 - 회사의 무역거래 준수에 대한 정보
 - 무역 준수 측정 자료
 - 과거에 적용받았던 벌칙 등
 - 정기 감사 내용 및 기타 정보

95) US CBP General notice, 4820-02-P, 2002.6.13., pp.3~6

96)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 2011.06, pp.6~7

- 회사의 노출된 위험에 대한 정보
 - 위험이 의심되는 특정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로부터의 수입
 - 물품 할당량, 비자, 반덤핑 또는 기타 세관거래로서 문제가 있는 수입
 - 특별관세규정이나 무역프로그램에 의한 대규모 수입
 - 복잡한 품목분류가 적용되는 대량 수입

- ISA 팀은 신청자에 대한 위험 평가 완료 후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신청서 검토회의(ARM)를 안내함
 - ISA 팀은 신청자가 사전에 신청서 검토회의(ARM)을 준비하도록 미리 평가된 최대 5개의 위험 요소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ISA 신청자는 최근 5년에서 10년간의 통관요약자료 사본을 무료로 제공받음⁹⁷⁾

- ISA 신청자는 신청서 검토회의(ARM) 기간 동안 다음의 정보 또는 행위를 ISA 팀에게 제공하거나 수용하여야 함
 - 회사의 구조와 권한 체계, 회사의 법령 준수 여부, 통관 부서와 직원, 통관 대리인(관세사)와의 관계, 세관 관련 교육 등의 정보
 - ISA 팀이 사전에 확인한 위험에 대해 문서화한 내부통제의 과정과 그 절차를 시연
 - 신청자는 기업의 구매 주문에서 선택 항목에 대한 지불까지 전체 수입통관절차를 ISA 팀에게 단계별로 설명하여야 함
 - 신청자는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행해진 각각의 내부통제 상황을 보여줘야 함
 - 관세청(CBP)에 수입 신고한 정보가 정확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ISA 팀에 의해 선택된 항목의 구매 주문서부터 최종 송장과 지불내역에 이르는 전 과정과 각각의 내부통제 시점을 상세히 설명
 - 위험평가와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빈도를 포함하여 자체 테스트 계획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논의

97)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 2011.6, p.5

- 신청자는 자체 테스트에 대해 ① 연간 계획의 레이아웃 ② 테스트 샘플링 및 절차 ③ 보고 형식 ④ 시정 조치 개발 ⑤ 실행방법에 대해 설명하여야 함
- 신청서 검토회의(ARM)기간 동안 회사가 ISA 팀에게 제공한 정보를 논의할 수 있는 소규모회의(a breakout session)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당
- ISA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시설 견학을 허용
- 신청자는 정보를 추가하거나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ISA 팀의 예비 피드백을 수용

3) 승인, 후속평가 및 승인 거절⁹⁸⁾

가) 승인

- 관세청(CBP)은 ISA 검토위원회(ISA Review Board)를 통해 기업의 ISA 프로그램 참가 승인을 결정함
 - ISA 검토위원회는 이민 및 세관 당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규정 및 관할 사무소(the Offices of Regulations & Rulings), 현업관리국(Field Operations) 및 국제무역국(International Trade)의 대표들로 구성됨
 - 기업의 ISA 프로그램 참가승인 결정을 위해 ISA 검토위원회는 평가의 개요를 제공하고 질문이나 우려사항을 고려한 내부 ISA 보고서를 매월 검토함
- ISA 검토위원회의 승인 결정을 받은 ISA 신청기업은 관세청(CBP)으로부터 ① ISA 인증서 ② ISA MOU 및 ③ ISA 프로그램에 동의한다는 공식 서신을 제공받음

나) 후속평가

- ISA 검토위원회가 최초 ISA 신청서 심사 중 내부통제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확인한 경

98)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 2011.6, pp.8~9

우에는 해당 ISA 평가보고서를 관세청(CBP)에 송부하여 ISA 후속 평가(ISA follow-up evaluation) 대상이 될 것임을 통보함

- ISA 후속 평가는 신청자가 시정조치를 개발하고 이를 시행한 때 신청자의 준비상태를 재평가하고자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60일 이상이 소요됨
- ISA 프로그램 신청자는 ISA 후속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개발 및 시행하거나 추가 문서를 제공하는 데 최대 6개월을 부여받음

다) 승인 거절

- 관세청(CBP)은 위험도가 낮은 수입자에게 ISA를 이용할 우선순위를 부여하므로, 재량에 따라 ISA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보유함
 - ISA 참가 승인은 각 신청인의 관세 거래와 기타 관련 요소의 범위나 성격에 따라 결정됨⁹⁹⁾
 - 기타 관련 요소에는 ① 신청자가 사전에 저위험 수입자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 ② 신청자가 수입자 법규 준수 모니터링 프로그램(ICMP) 테스트를 통해 사전 신청을 했는지 여부
 - ③ 신청자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AM)과 같은 관리자분야에서 종사했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됨
- 관세청(CBP)은 ISA 프로그램 참가기업 평가 결과 승인 거부를 결정하는 경우 ISA 신청기업에 거절사유를 포함한 서면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함
 - ISA 참가 신청자는 거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전에 승인거절 사유를 정정하여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음
 - 재심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신청자의 요청이 접수된 후 45일 이내에 발급됨

99) US CBP General notice, 4820-02-P, 2002.6.13., pp.3~6

4) 갱신 심사¹⁰⁰⁾

- ISA 참가승인 기업은 ① 신청 당시 자격요건 유지 ② 연례보고서 제출 ③ 변동사항 보고의 의무를 충족해야 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④ 승인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함
 - (자격요건 유지) ISA 참가기업은 신청 당시의 자격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연례보고서 제출) 참가기업은 ISA 제도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매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참가기업은 정기 보고서를 매년 ISA가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 내 파트너십 프로그램 부서장이 서류로 작성하여 관세청(CBP)에 제출하고, 사본은 국가기업상담관(NAM)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변동사항 보고) ISA 참가 기업은 기업의 재편성, 합병, 인수 등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기업 대표, 기업 내 파트너십 프로그램 부서장 및 국가기업상담관(NAM)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변동사항 보고는 연례 보고시점 또는 기업의 주요 사항 변경되거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시점 중 이른 날에 보고하여야 함

- 관세청(CBP)은 ISA 참가자가 ISA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중인지 평가하기 위해 ISA 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중에 갱신 심사(Continuation Review Meeting, CRM)을 할 수 있음
 - 관세청(CBP)은 ISA 기업의 결함이나 법규 준수의 불이행을 확인하는 대로 가능한 빨리 ISA 참가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단, ISA 참가자가 세관 법률 및 규정 준수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ISA 프로그램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ISA 승인을 취소함
 - 갱신 심사(CRM)의 결과는 기업 내 파트너십 프로그램 부서 및 ISA 프로그램에 게시됨

100) US CBP General notice, 4820-02-P, 2002.6.13., pp.7~8 및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 2011.6, pp.9~10

5) 승인 취소¹⁰¹⁾

- 관세청(CBP)은 ISA 참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ISA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을 통해 ISA 프로그램의 참가승인을 받은 경우
 - ISA 참가자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절도, 밀수 또는 절도범과 관련된 중범죄 또는 중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 ISA 참가자가 관세청(CBP) 요청에 따른 조사(inquiry), 심사(audit) 또는 수사(investigation)의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
 - ISA 참가자가 ISA MOU의 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 갱신 심사 결과 ISA 참가자가 ISA 프로그램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ISA 참가자가 승인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CBP)은 ISA 참가자에게 승인 취소서류를 송부함으로써 취소사실을 통보함
 - 단 ISA 승인취소 사유가 ① 기업의 고의적인 사유 ② 공중 보건 이익 또는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시 즉각적으로 ISA 승인이 취소됨

- 승인 취소를 통보받은 ISA 참가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취소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승인 취소에 대한 답변 내용은 승인 취소서류에 명시된 사실의 진위 여부와 법규 준수의 달성 내역 또는 달성 목표를 포함하여야 함
 - 관세청(CBP)은 60일간의 승인 취소 답변기간이 종료된 후 승인 취소 여부의 최종 결정을 발표함

- 비록 ISA 참가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기업은 승인 취소일로부터 1년 후 다시 ISA 참가를 신청할 수 있음

101)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 2011.6, pp.10~11

- 단, 기업의 고의적인 행동이나 공중보건 이익 또는 안전과 관련된 행위로 승인이 즉시 취소된 참가자는 승인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다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음

바. 심사내용¹⁰²⁾

1) 개요

- 관세청은 ISA 가이드라인에서 내부통제시스템 모델을 제시함
 - ISA 기업은 수입자 스스로 법규준수를 지킴으로써 잠재된 세관업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입거래내역에 대하여 내부통제시스템과 같은 영업기록시스템 보유가 요구됨
 - 영업체계시스템은 ISA 기업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관세청의 ISA 가이드라인 중 내부통제시스템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음
 - ISA 기업은 가이드라인상 내부통제시스템의 활용이 필수는 아니나, 내부통제시스템의 관리자나 평가자는 이를 통해 기업의 내부통제의 유용성 평가와 개선사항의 확인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이므로 사용하도록 권고됨
- 관세청의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은 기업 담당자의 의견이나 회사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각 내부통제 요소 옆에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임
 - 제공된 공간에는 '예/아니오' 유형으로 작성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회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함
 - 가이드라인 중 「부록 F」는 소규모 수입자가, 「부록G」는 대규모 사업구조 또는 복잡한 세관거래가 많은 대형 수입업자가 사용하기 적합함
- 기업 관리자 및 평가자는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내부 통제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식별하는 등 관세거래 관련 위험 방지를 위한 추가 지침으로 활용함

102)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 Appendix G, 2011.6, pp.1~12 및 한국 관세무역개발원, 『AEO 심사기법과 확산방안 연구용역』, 2009.12.23, pp.77~85

- 내부통제시스템의 활용은 단지 출발점이며 기업의 상황과 관련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용자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모든 요소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없고 단지 추가 지침으로 활용하여도 무방함

□ ISA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위해 관세심사방법의 하나인 집중심사제도(FA)와 동일하게 ① 통제환경 ② 위험평가 ③ 통제활동 ④ 정보 및 의사소통 ⑤ 모니터링의 총 5가지 요소를 기본 구성요소로 봄

〈표 III-1〉 ISA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요소

구분	내용
통제환경 (Control Environment)	1. 청렴성 및 윤리적 가치(Integrity and Ethical Values) 2. 적격성에 대한 관리(Commitment to Competence) 3. 경영진의 철학 및 경영스타일(Management's Philosophy and Operating Style) 4. 조직 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5. 권한과 책임의 부여(Assignment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6. 인사 정책과 실행(Human Resource Policies and Practices) 7. 감독그룹(Oversight Groups)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1. 활동 수준에서의 목표 수립(Establishment of Activity-Level Objectives) 2. 위험 식별(Risk Identification) 3. 위험 분석(Risk Analysis) 4. 변화 시기의 위험 관리(Managing Risks During Change)
통제활동 (Control Activities)	1. 세관(CBP)활동에 대한 일반적 정책내용(General Application) 2. 통제활동의 공통된 범주(Common Categories of Control Activities)
정보 및 의사소통 (Information & Communication)	1. 세관(CBP)활동에 대한 정보(Information) 2. 커뮤니케이션의 형식과 방법(Forms and Means of Communication)
모니터링 (Monitoring)	1. 지속적인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 2. 독립 평가(Separate Evaluation) 3. 문제 해결(Issue Resolution)

자료 : 강성훈 외 2인(2015.12), p.65

2) 통제환경

- 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이란 관리자와 직원들은 내부통제 및 양심적인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갖도록 조직 전체의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 ISA 기업은 아래의 심사항목을 통해 세관의 법규 준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환경을 조직 전체에 확산시켜 다른 내부통제 구성요소를 위한 토대를 제공함을 목표로 설정해야 함¹⁰³⁾
 - 세관업무의 법규 준수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수립
 - 세관과의 협조적인 관계
 - 교육 및 상담, 그리고 정보 제공을 통해 세관업무담당자의 적격성을 확보
 - 세관 법규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직원에게 책임 및 권한을 부여
 - 세관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중요성 강조 등
- 내부통제 관리자와 평가자는 통제환경의 형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이를 직원들이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형태보다는 그 내용에 좀 더 집중해야 함

3) 위험평가

- 위험평가(Risk Assessment)란 법규 준수에 방해가 되는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회사의 세관 관련 업무 및 운영방법 등을 분석하는 것임
- 위험평가의 필수조건은 ISA 기업과 활동에 대한 위험 등급 모두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수립하는 것임

103) 강성훈 외 2인(2015.12), pp.63~64

○ 목표가 설정되면 회사는 목표 달성을 성과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내부 및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내부통제의 하나인 위험평가를 시행해야 함

□ ISA 기업은 위험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으로부터 발생될 영향을 분석해야 함

○ 경영진은 위험 관리를 위한 접근방법을 수립하고 자체심사(self-testing) 등 내부통제 활동(control activity)을 결정해야 함

○ 관리자 또는 평가자는 위험평가를 통해 변경된 위험에 대한 목표 설정, 위험 식별, 위험 분석 및 위험 관리 등 내부통제시스템 변경 과정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함

4) 통제활동

□ 통제활동(Control Activities)은 법규 준수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일상 절차(day-to-day procedures)로서 담당 관리자가 회사 정책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는 정책(policy), 절차(procedure), 기법(technique) 및 메커니즘(mechanism)을 말함

□ 통제활동은 회사의 모든 직위체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됨

○ 가령 승인, 권한 부여, 검증, 조정, 성과검토, 보안활동, 기록 및 문서화 작업 등 직위별 여러 형태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함

□ 통제활동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검토자(reviewer)는 적절한 통제활동의 계획 수립, 해당 계획이 충분한지와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함

○ 관리자나 평가자(manager or evaluator)는 통제활동이 위험평가 과정에 적절히 연계되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함

□ 회사는 선택 가능한 다양한 통제활동이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상 통제활동 가이드가 전적인 해결책은 아님

- 그러나 통제활동 가이드에는 관리자나 평가자가 고려할 만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몇 가지 요점과 대부분의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주요 범주 또는 유형의 통제활동 요소가 있으므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두루 살펴보아야 함

5) 정보 및 의사소통

- 정보 및 의사소통(Information & Communication)은 범규준수를 위해 정보를 축적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조직 내 상하좌우로의 정보의 이동을 포함함
- 회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내·외부 사건에 관련된 신뢰성 있는 정보가 존재하여야 함
 - 이러한 정보는 기록되어야 하며 경영진과 회사 내 직원들에게 내부통제 및 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간 내에 형식을 갖추어 전달되어야 함
- 관리자와 평가자는 정보 및 의사소통 시스템이 조직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내부통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지를 내부통제 심사 시 고려해야 함

6) 모니터링

- 모니터링(Monitoring)은 관세 관련 업무수행의 활동성과에 대한 감독으로서 과거 업무성과의 질에 대한 평가 또는 심사나 기타 검토의 결과가 신속히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등을 의미함
 - 내부통제의 지속적인 유효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그 범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과 내부통제시스템 또는 그 일부에 대한 개별 평가가 모두 포함됨

- 지속적인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은 평상시 회사 운영 중에 발생하며 정기적인 관리와 감독, 비교, 조정 등의 활동과 회사 직원들의 직무 수행에 따른 기타 조치를 모두 포함함

- 개별 평가(separate evaluation)는 특정 시점의 효율성에 직접 초점을 맞추므로써 내부통제를 새로 검토하는 방법임
 - 개별 평가는 내부통제의 설계 검토와 즉시심사 등의 자체심사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관리방법 또는 평가방법도 포함됨
 - 또한 개별 평가자는 적절한 기술을 가진 회사의 내부감사자(internal auditor) 또는 외부감사자(external auditor)에 의해 이루어짐¹⁰⁴⁾

- 모니터링에는 발견된 감사 및 검토의 결과와 이에 따른 권고사항이 경영진의 주의를 집중시켜 적시에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포함시켜야 함
 - 이를 위해 관리자와 평가자는 모니터링이 내부통제를 위해 적정히 활용되는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정도를 고려해야 함

사. 심사사례

1) 개요

- ISA제도는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무역거래와 관련된 업무의 정확성을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관리 및 입증하며 이를 자체 심사하는 구조임
 - ISA 참가자는 ISA 신청 당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참가 취소가 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104)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 Appendix G(Internal Control Management and Evaluation Tool), 2011.6, p.12

- 따라서 각 ISA 참가기업은 위험을 모니터링 및 경감시킬 목적으로 수입 거래가 관세법 규를 정확하고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위험 평가 및 자체심사구조를 설계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함
- 관세청(CBP)은 ISA 핸드북에 위험평가와 자체심사에 대한 구조, 개발방법, 그리고 서류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¹⁰⁵⁾
 - 관세청(CBP)은 ISA 참가자의 자체심사에 대해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모니터링 활동의 일부이므로 획일화된 특정 심사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위험평가와 자체심사의 정확성을 위해 회사가 그러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청의 IS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험평가와 자체심사의 절차는 ① 위험평가방법의 종류와 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② 위험평가를 진행 ③ 자체심사 시 고려사항을 파악한 후 ④ 자체심사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⑤ 내부통제시스템의 조정의 순으로 이어짐

2) 위험평가

가) 개요

- 자체심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ISA 참가기업은 수입거래의 취약성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아래의 위험평가방법을 고려하여야 함
 -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평가방법의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
 - 자체심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
 - 위험 평가와 자체심사 수행자를 지정할 것
 - 위험 평가와 자체심사 결과를 문서화할 것

105)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 Appendix I(Guidance for Developing Self-Testing Plan), 2011.6

○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의 구현방법을 모색할 것

나) 위험평가지 고려사항

- ISA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위험은 무역, 산업 또는 공공부문(public)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노출의 정도를 의미함
 - 위험은 일상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드물게 또는 실수로 발생하는 특정 거래에서도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위험을 포괄함

- 위험평가 시행 전 ISA 참가자는 아래의 위험요인들을 위험평가 대상에 포함할지 고려해보아야 함
 - 신규, 복수 또는 하청 중개인의 사용
 - 특정 무역프로그램의 사용
 - 특정 무역프로그램은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의 품목분류 양허표(HTSUS) 제98조 및 제99조와 같은 특례 관세규정, 그리고 반덤핑 · 상계관세 등이 있음
 -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TSUS)의 복잡성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1순위에 해당하는 거래가격이 아닌 그 외의 가격을 사용¹⁰⁶⁾
 - 과세가격 결정시 최초 판매가격(first sales)을 사용
 - 착륙료 지불 판매조건(Landed Duty Paid terms of sale)의 사용
 - 지불 또는 지불할 수 있는 가격 이외의 추가지불금(포장, 판매 수수료, 보조금, 로열티 및 라이선스 수수료, 그리고 후속 재판매로 인한 수입)
 - 사전 또는 사후 검토별 품질과 수량
 - 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 새로운 경영 구조 및 직원 감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의 변화
 - 핵심 사업 신제품 시험 및 신규 제조업체의 사용 등과 같은 변화요인

106) 원문은 'Use of a Basis of Appraisal other than Transaction Value' 이며 의역은 19 CFR 152.101(Basis of appraisal)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 관세청(CBP)과 ISA 기업 간 의사소통 결과 그 영향력(내부 청문, 판결 결정, 정보 요청 및 수입신고정산 변경 통지 등)

□ 위협의 위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역거래에 수반된 위협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위협평가가 지속적 또는 최소한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다) 위협평가 사례

□ (사례 1) XYZ기업은 구매주문금액, 송장 금액 및 수입신고 금액 등 총 3가지 거래금액을 일치시키는 수입신고 사후심사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중임

○ 수입신고 사후심사 자동화 시스템은 상기 세 가지 값에 차이가 있으면 불일치 보고서가 생성되며 이 보고서는 불일치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시정 조치를 위해 법규 준수 부서(the Customs Compliance Department)로 이송됨

○ 단, 수동으로 입력된 항목은 사후심사 자동화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음

□ XYZ 기업과 같은 사례는 내부통제시스템 중 기업의 통제활동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반적인 거래상황이므로 위협평가 시 이를 포착하여야 함

○ 대부분의 XYZ기업의 거래가 위협에 대한 통제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위협평가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또한 기업은 지불하지 않은 가격이나 신고한 가격에 추가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 사후심사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비교되는 값이 정확하게 검증되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함

□ (사례 2) ISA 프로그램의 오랜 참가자인 X기업은 ISA 프로그램 비(非) 참가자인 ACME 기업을 인수하였음

○ ACME 기업은 사무용 컴퓨터 관리에 대한 정책 및 관리절차와 함께 관세·무역 법규 준수 매뉴얼을 유지중이었음

- X기업은 인수한 ACME기업의 정책 및 절차를 평가하여 위험 영역을 파악하고 과거 수입 거래를 검토하는 등 법규 준수 매뉴얼의 운영 및 관련 정책과 절차를 점진적으로 통합하여야 함
- ACME 기업의 수입거래 검토를 통해 X기업은 추가적인 위험 요소와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X기업의 법규준수 매뉴얼 절차에 완전히 통합될 때까지 자체심사를 진행하여야 함

3) 자체심사

가) 자체심사 시 고려사항

- ISA 기업은 위험관리기반 프로세스인 자체심사를 활용하여 중대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식별하고 통제하여야 함
- 자체심사는 내부통제시스템 요소 중 모니터링(*monitoring*)에 해당하므로 관세청(CBP)은 자체심사에 대해 특정 심사기법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업은 필요한 심사 프로그램을 설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음¹⁰⁷⁾
- 자체심사란 ISA 참가자가 위험평가를 통해 발견된 위험을 관리하고 위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단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위험관리란 수입거래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뒤,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체심사를 위한 기업의 자원 배정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함
- ISA 참가자는 위험관리를 통해 각 위험 영역에 대한 거래별 자체심사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음

107)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 Appendix B(Program Requirements), 2011.6, p.3

- ISA 참가자는 자체 심사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위험평가의 책임자, 위험평가의 시행 주기, 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문서화 주기
 - 선택된 수입거래의 위험평가 검토를 위해 사용될 방법론
 - 위험평가 대상인 수입거래를 심사할 독립적인 자(someone independent of the transaction)와 심사대상의 범위 비율
 - 재무기록에 대한 감사 내용 중 관세청(CBP)으로 보고되지 않는 신고금액 등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
 - 심사된 수입거래와 심사 결과의 문서화방법, 검색방법 및 보관방법
 - 심사 결과 발견된 오류의 처리방법(사후수입신고 정정 또는 사전자진신고 등)
 - 발견된 오류의 시정조치방법
 - 회사 내부적으로 심사 결과를 제공할 책임자 및 발견된 오류를 시정 조치할 책임자를 선정
 -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책과 절차의 검토 빈도 및 검토결과의 문서화 방법
 - 내부통제시스템 매뉴얼의 변경사항에 대한 검색 및 검토방법과 내부통제시스템 사용자가 해당 변경사항을 통보받는 방법

- 자체심사계획이 설정된 경우, 심사 간격은 특정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심사자는 심사대상과 무관한 자여야 함
 - 심사 간격은 일일, 월별, 분기별, 연간 또는 분기별 등으로 검토를 위한 특정 기간 또는 최소 수준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기적(periodic)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함
 - 자체심사 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심사 대상인 거래와 독립적인 자로 확인되어야 함

나) 자체심사 사례

- ACME 기업은 자체심사를 위해 Fast 운송업체와 계약하면서 Fast 운송업체에 월별 모든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함
 - 거래내역 자료는 ACME 기업에 청구된 거래뿐만 아니라 ACME 기업과 Fast 운송업체 모두를 수입자로 기재한 거래내역을 포함함

- Fast 운송업체의 거래내역을 자체심사하기 위해 ACME 기업은 제공된 자료를 활용함
 - 자체심사 대상은 수입자신고번호, ACME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명시된 물품의 적절한 품목분류, 벤더 또는 제조업체와의 적절한 관계 속에서 행하여진 수입신고 등이 있음

- ACME 기업의 자체심사는 Fast 운송업체에 대한 위험평가 중 확인된 하나의 위험 영역에 대해, 판단표집법(judgemental sample)¹⁰⁸⁾을 적용하여 발생한 X비율을 기준으로 함
 - ACME 기업은 판단표집법에 따라 Fast 운송업체의 품목분류를 이번 자체심사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HS 9801호에 따라 물품의 품목분류를 진행하였는지 확인코자 모든 상품분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함

- 자체심사 종료 후 ACME 기업은 자체심사 내용을 회사 내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에 입력하고, 향후 모니터링 대상을 요약하며 경영진에게 보고함
 - 입력 내용은 HS 9081호에 따른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자체 심사한 내용만 포함되어야 하며 이외의 자료는 제외함
 - ACME 기업의 법규 준수 부서는 각각의 ACME 기업의 자체심사계획에 따라 자체심사가 종료되면 향후 모니터링할 자체심사 결과와 해결조치를 요약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함

- Fast 운송업체의 자체심사와 관련하여 ACME 기업은 정기적으로 Fast 운송업체와 회의를 가지며 자체심사 결과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함

108) 판단표집법(judgemental sample)이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전체집합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대표적인 대상만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비확률 표집법의 종류중 하나임. 자료: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Judgment_sample, (검색일자: 2017.6.26.)

다) 위험평가와 자체심사의 동시 적용 사례

- X브랜드 기업은 지정된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한 특정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를 적용중임
 - X브랜드 기업에는 문서화된 일반특혜관세 수입신고 사후검증절차(post-entry review process)가 있으며 해당 검증은 건별 수입신고자에게 할당됨

- X브랜드 기업의 법규 준수 부서는 수입신고자(the entry analyst)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위험평가 중,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건의 검증 책임은 전적으로 건별 수입신고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이에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거래를 위험요소로 간주하고 일반특혜관세가 적용된 수입거래의 적정성과 이를 보증하는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지 자체심사하기로 함
 - 위험요소로 선택된 일반특혜관세가 적용된 수입거래들은 기업의 자체심사양식(spreadsheet)에 문서화되어 있음

- 수입신고자들은 자체심사를 요구받았으나 수입신고 사후검증절차(post-entry review process)의 일부로 일반특혜관세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만을 검증할 책임을 갖기 때문에 자체심사를 시행할 수 없었음

- 또한 법규 준수 부서의 일상적인 책임에는 수입신고서 사후검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X브랜드 기업의 자체심사 계획은 법규 준수 부서가 일반특혜관세의 전반적인 수입신고거래 내용을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함
 - 법규 준수 부서는 자체심사양식에 해당 심사 결과와 변경사항을 기록함

- 법규 준수 부서가 일반특혜관세가 적용된 수입신고내역을 심사할 때 오류를 발견하면 X브랜드 기업은 해당 오류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자체심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시정조치의 내용은 심사대상인 거래내역을 얼마나 확장할 것인지, 누가 해당 결과를 기업 내부에 보고할 것인지, 그리고 발견한 오류를 사전 신고(disclosure)나 사후 수입신고 정정(PEA)등 관세청(CBP)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등이 있음

4) 내부통제시스템의 조정¹⁰⁹⁾

- (통제활동 수정) 자체심사를 통해 발견된 위험은 제거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도록 내부 통제 요소 중 통제활동(Control Activity)을 수정해야 함
 - 자체심사를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의 약점을 파악하고 직원의 성과를 평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필수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결과 보관) ISA 참가자는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사 시행 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관세청(CBP)의 요청 시 제공 가능해야 함

- (적정한 조정안 제시) ISA 참가자는 위험평가 등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면 관세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를 위해 개정하여야 함
 - 내부통제시스템의 변경 필요성은 위험평가, 자체심사, 정보 교환, 내부통제 요소 중 모니터링 시행 시, 또는 관세청(CBP)으로부터의 고지사항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확인 함

109)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 Appendix B(Program Requirements), 2011.6, p.3

IV. 제도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정산제도와 비교

1) 제도 관련

- 미국의 정산제도는 세관이 주체가 되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추정납부액을 정산하여 최종세액으로 확정하는 제도임
 - 수입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정산기간을 연장하거나 보류할 수 있음
 - 정산보류는 수입자가 덤핑이나 상계관세 등 조사에 따라 정산절차를 이행할 수 없거나, 정산제도 이용가능 업체가 아님에도 이용한 경우 보류됨
 - 정산은 세관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따른 이의제기 및 심사청구가 가능함

-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정산제도는 수입자가 주체가 되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이를 세관이 검토 후 확정하는 제도임
 - 수입자는 1차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2차로 확인관세사의 검증을 거친 후 3차로 기업상담전문관(세관)의 종합검토 및 최종세액이 확정되는 구조임
 - 우리나라는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장치가 별도 없음
 - 다만 자격배제요건에 해당하거나 정산업체가 요청 시 정산제도를 정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세액정산은 AEO 공인을 통해 수입거래의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는 일부 수입자에게 납부세액의 적정성을 자율심사하도록 하고 해당 결과를 세관이 검토하는

제도이며, 이는 세관 처분과 무관하기 때문에 본 제도하에서 이의제기 및 심사청구가 불가함

〈표 IV-1〉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산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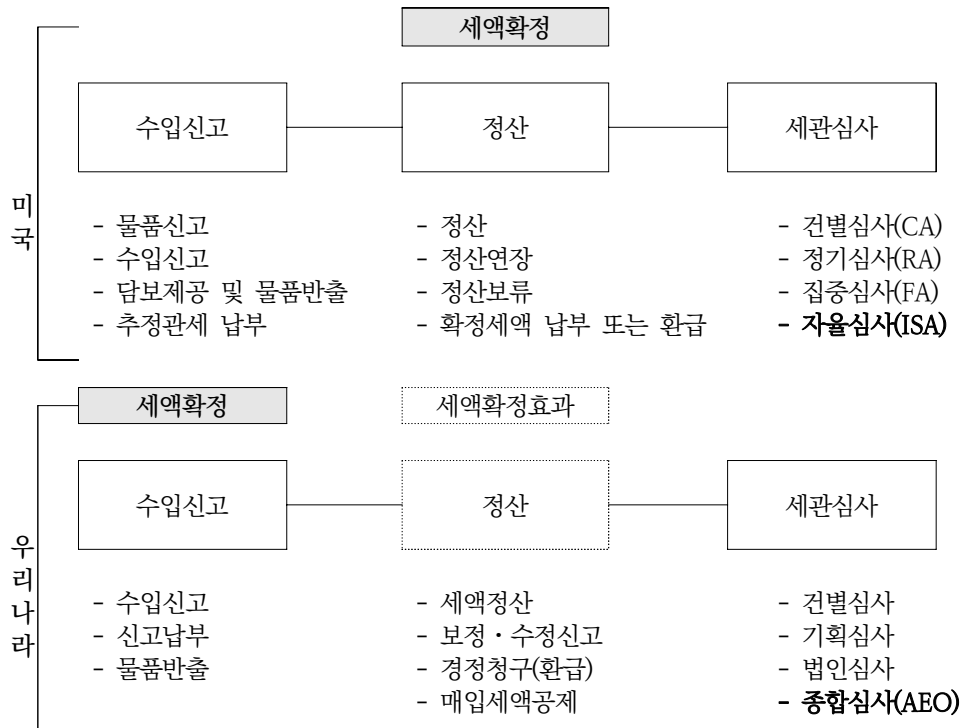
	우리나라	미국
세액확정시기	- 신고납부 시	- 정산 시
정산대상	- 모든 수입물품	- 모든 수입물품(수입거래건)
정산기간	- 기업의 1회계기간	- 물품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연장	-	- 일정요건 해당 시 1년 단위로 최대 3번 연장(최장 4년)
정산분야	- 관세율 - 품목분류 - 관세환급 - 관세감면 - 보세공장 - 외환거래법	- 관세율 - 품목분류 - 관세환급 - 관세감면
정산신고내용	- 검증분야 - 정산보고(요약) - 정산세액 - 상세보고사항 · 법인개요 · 정산분야별 점검사항 · 기업상담관의 제공정보 검증결과 · 쟁점사항	- 과소납부하여 증가되거나 추가된 관세 - 과다납부하여 환급해야 할 관세 - 최종 신고분과 조정분
정산방법	- 1차 수입자의 세액정산 - 2차 확인관세사의 심사 - 3차 기업상담전문관(세관)의 검토 및 세액확정 통지	- 세관의 정산 - 세관의 세액확정 통지
운용주체	- 수입자 - 확인관세사 - 기업상담전문관(세관)	- 세관
이의제기	-	- 가능
정산예외규정	- 정산정지	- 정산보류

자료: 저자 작성

2) 세액확정시기

- 관세채권의 확정시기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신고납부 당시 추정관세를 납부하고 이후 정산에서 세관의 확정력이 부여되는 구조임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납부 당시 세액이 확정되고 이후 세관의 처분성(경정)을 일 정기간 유예한 뒤 그 기간 동안 수입자에게 세액 적정성을 자율심사하도록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세액의 최종 확정 효과의 정산시점으로 연기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또한 당초 종합심사에 따라 5년치 관세오류를 추정하던 것은 정산제도를 통해 1년치 세액을 조기 확정함으로써 추정세액이 감소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음

[그림 IV-1]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산제도 흐름 비교



자료: 저자 작성

나. 자율심사제도와 비교

1) 제도 시행 배경

- 미국의 ISA는 수입자가 관세무역 관련 법령과 규정의 위반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전 방지하고 그러한 결과로 법규 준수도가 향상되면 세관 업무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민관공동협약의 목적으로 2002년 6월 도입됨
- 우리나라는 기업심사 강화와 추징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제한 등의 요인으로 관세청과 수입업자 간 조세마찰이 심화되자, 이를 해소하고자 수입자가 미리 납부할 세액을 자체 심사하고 세관의 도움을 받아 세액을 확정할 목적으로 2017년 4월 도입됨

2) 자격요건

- 미국 ISA제도는 C-TPAT 가입기업 중 수입자 자율심사 양해각서(ISA MOU)와 조사표(Questionnaire)를 제출하여 제도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으로서 자격요건상 열거된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만이 참가 가능함
- 우리나라의 AEO 승인기업 중 수입부문에 한정하여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으로서 최근 2년 이내 특례적용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 법령상 열거된 항목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됨

〈표 IV-2〉 우리나라 정산제도와 미국 ISA의 자격요건 비교

	우리나라	미국
포함	- AEO 수입부문 공인 기업일 것	- C-TPAT 승인 기업일 것 - 미국에 주소를 둔 수입자로서 ISA 신청 전 2년간의 수입실적 보유자 - 적용되는 모든 세관법과 관련 규정을 따를 것을 동의 -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및 유지할 것 - ISA 조사표(ISA Questionnaire)와 양해각서(ISA MOU)의 내용에 동의하고 서류를 제출할 것
제외	- AEO 수출 및 물류 부문만 공인받은 수입기업 - 최근 2년 이내 특례적용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기업 - 관세법 등 법률위반혐의로 세관조사를 받은 기업 - 기타 납세협력의무 위반사항이 있는 기업	-

자료: 저자 작성

2) 심사절차

- 미국은 최초 ISA 참가신청서에 대한 관세청의 심사는 까다로우나 승인 이후에는 기업의 주요 변경사항 등 일부 내용만을 보고받는 등 ISA 기업의 자체심사에 좀 더 비중을 둠
- ISA 기업은 참가신청 당시 ISA 양해각서와 조사표를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여부와 자체심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받는 등 C-TPAT 승인과 별도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함
- 승인 이후 ISA 기업의 심사는 위험평가와 자체심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 유지하고 법규 준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등 기업의 자율적인 심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 수입세액 정산제도 참가 신청에 대한 세관의 심사는 미국에 비해 단순해 보임
 - AEO 승인기업 중 수입부문 기업이 필요에 의해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임¹¹⁰⁾
- 그러나 승인 후 수입세액 정산보고의 심사는 ① 기업의 자체심사 ② 외부전문가인 확인관세사의 심사 ③ 세관의 최종심사 3단계로 이루어져 미국에 비해 까다로워 보임

〈표 IV-3〉 우리나라 정산제도와 미국 ISA의 심사절차 비교

참가신청시점		승인 후
미국	1단계: 세관의 참가신청서 심사	기업의 자체심사
	2단계: 세관의 신청서검토회의	
	3단계: 세관의 신청서 승인 등 심사	
우리나라	세관의 참가신청서 심사	1단계: 기업의 자체심사
		2단계: 확인관세사 심사
		3단계: 세관 심사

자료: 저자 작성

4) 심사내용(자율점검항목)

- 미국은 ISA제도를 통해 세액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내부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평가함으로써 세액오류를 사전 방지함
 - ISA제도는 관세거래에 대한 법규 준수 및 법규 위반의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하는 등 전반적인 무역위험요소를 심사대상으로 함
 - 내부통제시스템은 기업의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과 모니터

110) 우리나라 AEO의 승인기준은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 건전성 및 화물안전기준으로 미국의 C-TPAT과 ISA의 통합 기준을 지향하므로 수입세액 정산제도 참가신청 당시 내부통제시스템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문제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임

링의 5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짐

- 우리나라의 수입세액정산제도는 8대 통관 적법성 분야 중 6대 부문으로서 과세가격, 품목분류, 관세감면, 관세환급, 보세공장, 외환거래법 등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만을 심사대상으로 함
- 내부통제시스템의 심사는 AEO 공인취득 후 5년 기간 내 1회 시행하는 종합심사에서 다뤄짐

〈표 IV-4〉 우리나라 정산제도와 미국 ISA의 심사내용 비교

심사주기	우리나라 ¹⁾	미국 ²⁾	심사주기
내부통제시스템 항목			
5년	수출입관리조직의 경영방침 수립	통제환경	1년
	위험관리	위험평가	
	문서화	통제활동	
	정보공유	정보 및 의사소통	
	주기적 평가	모니터링	
통관적법성 항목			
1년	과세가격	-	-
	품목분류		
	관세감면		
	관세환급		
	보세공장		
	외환거래법		

주: 1) AEO 수입부문 공인기업에 한함

2) ISA기업은 통관 적법성 심사에서 제외됨

자료: 저자 작성

5) 제3자 운용주체 관련

가) 기업전문상담관(AM)의 심사 범위

- 미국의 ISA제도에서 국가기업상담관(NAM)의 심사 범위는 수입거래의 전반적인 흐름과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등 포괄적임
 - 국가기업상담관(NAM)은 ① ISA 참가신청서 검토 및 갱신 심사에 참여 ② 연례보고서(ANL) 사본을 제출받아 위험 분석 ③ ISA 참가기간 동안 기업의 법규준수와 잠재위험에 대해 모니터링, 컨설팅, 식별 및 분석된 항목을 관리감독 ④ 기타 무역준수와 관련된 교육, 지원, 개선사항을 위한 상호협회의 책임이 있음
 - 또한 국가기업상담관(NAM)은 매년 ISA 기업의 자체심사 후 확인된 내용과 내부통제에 달라진 변화 보고 등을 포함하여 모든 법규준수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음
 - 기업평가과정에서 특정 위반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직접 관여하여 처리하지 않고 ISA 기업에 통지하며, 동 위반사항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처리함¹¹¹⁾

- 우리나라 기업상담관(AM)의 심사 범위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세액정산보고서의 심사에 대해서는 확인관세사가 추가로 심사한 보고서를 전달받아 재차 심사를 진행하므로 미국에 비해 세액심사에 집중함
 - 수입세액에 대해 기업에서 1차로 자체심사하고 이를 외부기관인 확인관세사의 컨설팅을 받아 2차 심사 후 기업상담관(AM)의 3차 심사를 끝으로 세액이 확정됨

- 나) 제3의 심사자의 유형
 - 미국 ISA 제도는 기업의 자체심사의 경우 외부 심사자(external auditor)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용 여부는 기업의 선택에 맡김

111) 성남길 외 4인(2009.12), p.223

-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이 자체심사한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2차로 심사할 확인관세사를 최소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등 확인관세사 이용이 필수임
 - 확인관세사의 심사 후 전달받은 보고서를 기업상담관(AM)이 해당 보고서의 종합 강평과 정산결과를 통보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확인관세사의 정확한 심사가 본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함
- 미국의 자체심사자는 심사 대상인 거래와 독립적인 자(someone independent of the transaction)가 심사 수행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내·외부 심사자의 제한이 없음
 - 기업의 내부 심사자이기 때문에 배제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심사대상인 거래와 무관한 자라면 누구나 심사 가능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확인관세사는 해당 기업의 수출입신고 및 환급청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신고인 관세사나 기업의 소속관세사 선임이 제한됨
 - 신고인 관세사와 동일한 사무소나 법인에 소속된 관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할 총 확인관세사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6) 혜택 관련

가) 관세조사 제외

- 미국은 ISA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현장 심사, 감사 및 통관적법성심사(R/A)에서 제외함
 - 만약 수입자가 환급(drawback)과 외국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s)를 ISA제도에 포함시켰다면 해당 제도들 또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일반적인 기업심사 제외가 아닌, 수입세액정산보고서를 통해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의 관세에 대해서만 관세조사를 면제함

- 세관·기업·관세사의 3자간 상호 이해관계 충돌이 없이 충분히 검증된 정산보고서에 대해서는 기업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심사를 하지 않음
- 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 ②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③ 기업상담관(AM)이 정산결과 통보 시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결과 통지하는 경우에는 추가 심사가 가능함

나) 추정세액 및 벌칙의 완화

- 미국은 국가기업상담관(NAM)이 ISA기업의 법령위반 징후를 발견하면 오류를 알려주고 ISA 기업은 이를 사전신고(prior disclosure) 또는 재정정(reconciliation) 등 관세청(CBP)에 적절한 고지를 하여 발생 가능한 가산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기업상담관(AM)의 정산통지를 통해 해당 연도의 세액오류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납부하고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음
 - 과거 5년마다 1번씩 시행되는 종합심사 시 추정되던 관세와 누적된 가산세의 처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2013년 신설된 추정관세액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제도로 인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음
-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제도 이용 기업에 대해 벌칙 완화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미국의 ISA 기업이 민사 처벌이나 벌금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ISA 제도에 참여한 사실은 처분의 경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수입세액정산제도에 참여하는 AEO 공인기업은 과태료와 통고처분금액의 경감 등 벌칙 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¹¹²⁾

112) 강성훈 외 2인(2015.12), p.20

다) 연례보고서 제출 제외

- 미국의 ISA 기업은 필수요건으로 연례보고서(ANL)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예외대상은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수입세액정산제도 이용 업체는 AEO 의무 중 하나인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을 세액심사보고서 제출로 같음하므로 결론적으로 AEO 연례보고서 제출을 면제받는 혜택을 누림
- 수입세액정산제도 이용 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도래하는 종합심사 때 정기자체보고서를 제출하므로 기존 매년 제출 의무에서 5년에 한 번 제출하는 것으로 혜택범위가 넓어짐

〈표 IV-5〉 우리나라 정산제도와 미국 ISA의 비교 요약

구분		우리나라	미국
1. 제도 관련	시행 목적	- 민·관 간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고자 도입	- 수입자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관세거래의 범규 준수를 지향하고자 도입
	자격 대상	- AEO 승인기업 중 수입부문	- C-TPAT 승인기업 중 ISA 참가 신청 희망자
	심사 절차	- 참가 승인 후 세액정산심사에 좀 더 가중을 둠 - 8대 통관 적법성 중 6대 부문 - 과세가격, 품목분류, 관세감면, 관세환급, 보세공장, 외환거래법	- 참가 승인심사에 좀 더 가중을 둠 - 5대 내부통제요소 (통관 적법성 심사 제외) -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과 모니터링
	심사 내용	- 범규 준수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부문에 추가하여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을 포함	- 범규 준수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부문
2. 제3자 운용주체 관련	기업 상담관	- 총 16명 ¹⁾ 이 10개 수입업체 ²⁾ 를 관리	- 총 40명이 550개 수입업체를 관리 ³⁾
	제3자 심사자	- 필수요건	- 선택요건
	관세조사 면제	- 기업 소속관세사 또는 신고인관세사는 선임 제한	- 심사대상 거래와 무관한 자라면 기업 내·외 부 심사자 모두 해당
	추징세액의 완화	- 세액확정이 완료된 정산연도에 대해서만 관세 조사 면제	- 정기감사와 통관 적법성 심사 등 관세조사 면제
3. 혜택 관련	별치의 완화	- 세액오류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완화 가능 - 정산연도의 추징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 세액오류에 대한 사전고지와 재정정을 통해 가산세 완화 가능
	연례보고서 제출 면제	- 과태료와 통고처분금액 등 처벌이 경감됨	- ISA 참가사실은 민사처벌 또는 벌금처분의 경감요인으로 작용 가능함
		- 수입세액정산보고서 제출로 연례보고서 제출 감음	- 해당사항 없음

주: 1) 2016년 12월 기준, 2) 2017년 4월 기준, 3) 2009년 11월 기준

자료: 저자 작성

2. 시사점

- 본 소결에서는 우리나라 수입세액정산제도와 미국의 정산제도·자율심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가. 제도 정착을 위한 컨센서스 필요

- 수입세액정산제도의 필요성은 인지되지만 제도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음
- 수입기업은 정산제도가 제공하는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및 가산세이자율 부담 경감, 관세조사 면제 등 기업재무 및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제도 도입을 통해 발생하는 업무 및 추가비용 발생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
- 기업 입장에서 지정업체가 되면 매년 통관 적법성 자체평가보고를 제출해야 하는 업무 부담과 외부전문가 의뢰 컨설팅 비용이 발생함
 - AEO를 받은 기업은 통관 적법성 분야에 대해 5년마다 평가해야 하는데 신설 제도적용 시 통관 적법성 분야도 매년 보고해야 하므로 해당 기업의 업무 부담이 예상됨
 - AEO 공인이 유지되는 기간(5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므로 지정업체로 참여 시 관련 컨설팅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기업비용이 증가하게 됨
- 따라서 수입세액 정산제도 도입으로 기업이 얻는 편익 대비 업무부담과 행정비용이 크다면 참여 부진이 생길 수 있음
- 제도 실행에 대한 컨센서스를 위해서는 제도 성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예컨대 현재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혜택 부여 중심인지 혹은 심사의 일환인지 등에 대해 명확화 하는 것이 도움이 됨

- 정산제도는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중 자격요건이 갖춰진 AEO 인증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로 강제성이 없으므로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지면 제도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심사의 일환으로 간다면 잠재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겠으나 기업이 제도 실익에 대해 체감하고 참여 유인을 늘리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규제가 아닌 혜택으로 인지되어야 것으로 보임

- 혜택 중심이라면 AEO 업체에 대한 특혜 적용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임
- 동 제도가 자율심사규정(2003)¹¹³⁾이 이어진 심사의 일환이라면 규제의 성격이 강해짐

□ 수입업체 입장 외에도 자격사 간 업무권한의 이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확인관세사 자격은 신고인 관세사와 동일한 사무소 또는 법인에 소속된 관세사는 50%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관세법인이 통관관세사인 점을 감안할 때 전문자격사 간 업무 논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 FTA 체제가 자리잡으면서 관세법인을 소속계열사로 하는 회계법인이 늘어나고 감사로 인한 거래이익이 회계법인으로 귀속되는 등 관세사업계와 마찰이 예상됨¹¹⁴⁾

□ 관세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모두 소속 관세사를 통해 정산제도 확인관세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관세사가 소속된 법인 간의 경쟁이 예상됨

113) 기업심사가 법인심사, 기획심사, 종합심사로 전환되면서 관세법상 자율심사제도의 흐름이 이어짐

114) 관세사가 아닌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자율심사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받게 됨

- 통관관세사 외 확인관세사만 둔 관세법인 설립, 관세사를 고용한 자회사 개념의 관세법인을 설립하는 회계법인 등의 형태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타 자격사 간의 업무 논쟁 외에도 수입세액 정산검증 가부 여부를 통해 통관관세사(수입신고·납세 같이하는 관세사) 간의 등급이 형성되어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¹¹⁵⁾
 - 제도가 확대되어 정산검증 시장이 커진다고 가정하면 정산업체 컨설팅을 하지 않고 통관만 하는 관세사의 경우 경쟁력을 잃을 수 있음
- 이런 논란 속에서 집행세관은 수입업체와 관세사업계의 제도 컨센서스 확립을 위해 각 주체들이 제도 필요성에 동의하도록 유인하고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처해 실효성을 제고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함

나. 세부 가이드라인 필요

- 현재 도입 초기 단계에서 정산제도 요건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예시1. 관세조사 및 심사에서 면제되는 정산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지정업체들의 2016년 이전 건에 대한 정산에 대한 심사면제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 현재 정산건에 대한 심사는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산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함
 - 즉, 정산건에 대한 면제 혹은 기간에 대한 면제 등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야 함
 - 예를들어 정산건이 ① 기간 안에 속하는 모든 수입건으로 볼 것인지 ② 정산건수 기준인지 ③ 그외 별도기준 적용인지 등 면제건에 대한 정확한 범위가 설정되어야 함
- 예시2. 관세사를 선임하는 경우 신고인 관세사와 동일한 사무소 또는 법인에 소속된 관

115) 관세법인 통관관세사 인터뷰. 2017. 5.30

세사는 50%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¹¹⁶⁾는 조항에서 50%가 관세사 인수에 대한 것인지 정산업무기준의 50%인지 명확하지 않음

- 명수로 제한을 둔다고 해도 편법 발생이 가능함
 - 예를 들어 4명 중 2명만 통관관세사, 나머지 외부관세사 기용 시 통관관세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2명은 형식을 맞추기 위한 영입이 가능함

다. 관세조사 및 심사면제의 완전성 여부

- 2015년 기획심사의 추정금액은 약 2,815억원으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지원 마련 정책방향에 따라 상시 사후검증 체제로 운영되었음¹¹⁷⁾
 - 심사면제 확보는 업체의 추정 방지를 위한 중요한 문제임

- 수입세액정산제도는 지정업체는 매년 정산을 통해 심사면제 혜택이 부여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중복심사의 문제가 있음
 - 2017년에 신설되었으므로 2016년 정산분에 대해 심사가 면제됨
 - 하지만 정산업체로 지정되어 정산이 종료되었는데도 과거분에 대해 심사해서 추정되면 중복심사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됨

- 즉, 정산업체로 지정되면 심사가 면제되는 등 심사면제 완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기간 내에 심사가 안 된 건에 대해서도 중복심사가 없어야 기업들이 제도의 효용을 체감할 것으로 보임
 - 정기심사와 차별성이 확보되어야 함
 - 심사 때 문제없다고 결론내린 심사에 대해 그전 법인심사 대상기간은 심사범위가 아니어야 함

11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3의2항

117) 『관세연감』, 2016, p.142

라. 기업상담전문관(AM)과 확인관세사 간의 협업 중요성

-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공인업체와의 정보교환, 업체관련 정보 분석, 기업프로파일을 관리하는 등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기업-세관 사이 조정자 역할을 함
 - 현재 관할세관 기업상담전문관은 팀장급¹¹⁸⁾으로 AEO에 지식 축적연한이 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상담전문관 자격 규정¹¹⁹⁾에 따라 업무 전문성이 확보된 상태로 양질의 정보 제공이 가능함
 - 기존 8~9급 위주의 기업상담전문관을 2017년부터 팀장급 관세전문가 33팀으로 구성함
- 하지만 한정된 세관 인력¹²⁰⁾으로 모든 심사를 담당할 수 없으므로 정산보고서의 자체 점검 사항을 확인·검증하는 확인관세사와의 협업이 중요함
 - 기업상담전문관 단독으로 기업에서 이뤄졌던 모든 업무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확인관세사와의 협업이 필요함
- 기업상담전문관과 확인관세사가 협업 시 기업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업체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제도가 운용된다면 기업의 제도에 대한 신뢰도 및 수용도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유연한 업무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됨
 -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확인관세사는 업체 정보를 잘 인지하고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괄적으로 접근·감사할 수 있어야 함
 - 기업상담전문관이 위험정보를 제공하면 외부관세사가 함께 접근·검증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이 중요함

118) 6~7급

119) 송선옥, 「한국 관세청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9, p.7 및 성남길,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제도의 해외 사례조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 2009, p.89

120) 관세청 인력 4,689명 중 AM은 10여명, 관세사 및 관세업무인력은 7,972명임. 『관세연감』, 2017

마. 향후 단계적 제도 확대 고려

- 현재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AEO 인증을 취득한 수입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최초 지정업체 목표 수는 30여 개였으나 2017년에 10개 업체만 지정하여 시범운영하기로 함
- 만약 이 제도가 AEO 공인기업에 시범실시된 후 조세저항 및 경영위험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를 낸다면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일반 수입업체 또한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발판 삼아 매년 세액오류에 대한 자율심사를 진행하여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제도의 활용률을 간접적으로 늘리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AEO 공인기업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의 위험을 회피하고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누린다면 불필요한 조세불복의 횡수가 줄어들 것임
- 일반적으로의 확대 시행에 대한 또 다른 근거는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측면에서 수입 관련 세액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임
 - 동 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수입 관련 세액 역시 상시 관리할 수 있게 됨
 - 내국세의 경우 세무회계감사를 통해 상시 관리하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나 관세의 경우 그렇지 않음
- 기업의 행정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관세 역시 세무회계감사와 유사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관세 행정감사는 확인관세사 서비스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납세자의 조세부담 역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광재우 외(2016)는 감사인이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경영안정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이 감소함¹²¹⁾
 - 이진수(2010)에 따르면, 기업이 감사품질이 인증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경우 회계발생액의 미래이익에 대한 예측능력이 증가하였으며 감사품질의 개선으로 인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되었음¹²²⁾

- 만약 상시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서 수입세액정산제도의 확대 시행을 적극 검토하게 된다면 기업 규모별로 혜택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대기업의 경우 행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실제로 AEO 공인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임

- 따라서 제도를 일반에 확대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비용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내국세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경우¹²³⁾ 참여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연장,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비용, 의료비교육비), 표준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참여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음
 - 수입세액 정산제도 역시 적용 시 관세사고용비 등 행정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단, AEO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¹²⁴⁾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비용지원이 되는 분야일수록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활동 및 과세관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므로 향후 제도의 효과성 및 제도 확대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21) 박재우·안형태,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동시 제공 여부, 유형 및 보수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122) 이진수, 「감사품질의 정보효과와 시장효율성 검증」, 2010

123) https://www.nts.go.kr/call/income_tax/2013/htm/01_16_01.html 참조

124) 중소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사업 정부예산 7.5억원 46개 업체 지원

참고문헌

1. 국문 보고서

- 강성훈·김미영·김다량, 『AEO 공인기업 사후관리제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곽재우·안형태,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동시 제공 여부, 유형 및 보수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2016
- 관세청, 「정기수입세액 정산제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7.4
- _____, 「정기수입세액 정산제도 관련 AEO 기업설명회」 2017.2
- _____,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관련 AEO 설명회」, 관세청 심사정책과, 2017.2
- _____,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심사정책과, 2017
- _____, 『관세연감』, 2016
- 김재일,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고도화를 위한 AEO제도 효율화 방안」, 관세청, 2014
- 김태인, 「한국과 미국의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절차 비교분석」,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09.2
- 성남길·김영춘·조영태·안이한·신태철,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제도의 해외 사례조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 2009.12
- 송선욱, 「미국 관세심사의 기업내부통제시스템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3호, 2009.6
- _____, 「한국 관세청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9
- 이진수, 「감사품질의 정보효과와 시장효율성 검증」, 2010
- 정재완, 「한국관세심사제도의 현황과 과제」, 2009
- 정재호·정재완·이정미·김정아·박지우, 『통관환경 평가지표 개발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기업상담관(AM)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2009
_____, 「AEO 심사기법과 확산방안 연구용역」, 2009.12
한국관세학회,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세액 정산제도 등 도입방안 연구』,
2008.12

2. 영문 보고서

US CBP, 『*Importer Self-Assessment Handbook*』, 2011.06
WCO, 『*KYOTO CONVENTION GENERAL ANNEX GUIDELINES*』, 2010

3. 국문 웹사이트

관세청, 보도자료, 「달라지는 관세행정」, http://english0.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jsessionid=GPy9YN6H62q0JWDQSGJyT7HSLFTGGtSkS2GJHGBL4ZJ7Lv0VyvSV!-1746784105?bbsId=BBSMSTR_1018&nttId=1667&layoutMenuNo=290&siteId=main&searchCtgy=&searchCnd=&searchWrd=¤tPageNo=195&recordCountPerPage=10, (검색일자 : 2017.1.25.)
관세청, 보도자료,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최고경영자 간담회」,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8688>, (검색일자 2017.2.13)
국가 법령정보, <http://www.law.go.kr/>
국세청, <https://www.nts.go.kr/>
법제처, www.moleg.go.kr
삼일아이, <http://www.samili.com>
씨엘HS, www.clhs.co.kr

4. 영문 웹사이트

US CBP, <https://www.cbp.gov>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
WCO, <http://www.wcoomd.org>

부록 I.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신고납부 세액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이하 “정산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산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제2항에 따른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입부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관세청장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정산업체는 매년 직전 정산연도의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자체점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사항
 5.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6. 보세공장 운영관련 법규준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업상담전문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 ⑤ 제4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는 정산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⑥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의 자체점검 지원을 위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또는 관련자료를 정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 ⑦ 정산업체는 제6항에 따라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4항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⑧ 정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를 면제한다. 다만, 기업상담전문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⑨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업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인유효기간 동안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2.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정산업체가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제18조의3(정산보고의 확인) ① 정산업체는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의 정확한 검증 및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의 검증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는 최소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사는 선임할 수 없다.
 1. 정산업체에 소속된 관세사
 2. 정산업체를 위해 「관세사법」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신고 및 환급청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신고인 관세사
 3. 기타 수입세액 정산보고 확인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관세사
-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사를 선임한 정산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임관세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변경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사의 확인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8조의4(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가 제출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결과 통보서를 정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에 대하여는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기타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검토, 질의, 자문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과통지한 사안의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자: 2017.2.15)

부록 Ⅱ. 「관세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삭제 〈2011.12.31.〉

④ 납세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

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에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제41조(가산금)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15.〉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전문개정 2010.12.30.]

부록 III. 정산제도 양식

[별지 제13호 서식]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① 업체명 (대표자)		②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전자우편	
⑥ 정산기간			
⑦ 적용 요건			⑧ 충족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해당 여부 - '수입부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일 것 			[]에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 이내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 정지를 2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에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등 위반혐의로 세관의 조사 진행 여부 			[]에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여부 - 관세사 선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 첨부 가능(선택) 			[]에 []아니오
<p>「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p>			
신청인			년 월 일
관 세 청 장 귀하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 서식]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서

지정번호			
① 업체명 (대표자)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전자우편	
⑥ 정산기간			
<p style="text-align: center;">귀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정기 수입 세액 정산업체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관 세 청 장 (인)</p>			

[별지 제16호 서식]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

수입세액 정산보고 업체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관세사 선임 내역

번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명 (등록번호)	검토편야	연락처 (전화, 이메일)
1				
2				
3				
4				
5				
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보고 확인을 위한 관세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관세사 등록증 등 입증서류

[별지 제17호 서식]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변경신고서

수입세액 정산보고 업체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변경내역

번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명 (등록번호)		
	검토편야		
	연락처 (전화, 이메일)		
2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명 (등록번호)		
	검토편야		
	연락처 (전화, 이메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보고 확인을 위한 관세사 선임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관세사 등록증 등 입증서류

관세연구 17-02

수입세액 정산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발 행 2017년 6월 30일

저 자 김빛마로 · 박지우 · 김다량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에스디워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ISBN 978-89-8191-889-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